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A silhouette illustration of four workers in a dark blue field. From left to right: a worker bent over with a shovel, a worker with a pickaxe, a worker with a shovel and a pickaxe, and a worker with a shovel. The background shows a dark blue horizon with some hill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강제노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강제노동

목 차

I 서문 / 4

II 강제노동 금지: 국제법적 프레임워크 / 6

III 방법론 / 16

IV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강제노동 유형 / 17

- i. 구금 시설 내 노동
- ii. 국가가 강제로 배정한 직장
- iii. 군 징집
- iv. 돌격대
- v. 작업 동원
- vi. 해외노동자

V 결론 / 43

VI 권고 / 46

별 첨

별 첨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제 인권 의무 및
강제노동 관련 국제 표준 / 50

별 첨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노동자에 관한 국내법 체계 / 64

별 첨 3: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면담한 이탈자의 증인 진술 / 71

I. 서문

1. 본 보고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및 해당국에 의한 광범위한 강제노동 사용 실태를 살핀다. 이는 국제인권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일부 경우 국제형사법상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노예화 사례일 수 있다.
2. 본 보고서는 유엔 총회 결의 48/141호와 인권이사회 결의 25/25호에 의거하여 유엔 인권최고대표에 부여된 위임권한을 근거로 한다. 앞서 언급한 두 결의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로 하여금 현장사무소를 설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을 살피고, 책임 규명을 증진하며, 유관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지평 확대 노력을 통해 해당국 내 상황에 대한 대중 인식을 고취시키도록 했다.
3. 본 보고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광범위한 강제노동 동원에 기대어 제품을 생산하고 공공 사업을 운영하며 외화를 벌어들여 국제 인권 의무를 위반하는 상황을 다룬다. 강제노동은 또한 정치적 강압의 한 형태로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노동과 함께 사상 주입 및 자기 비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는 통제의 수단이며 정치 제도와 지도층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재확인하려는 것이다.¹ 본 보고서는 광범위하게 조직되는 강제노동이 개인의 삶에 거의 예외 없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데, 군 징집병, 국영 기업소 노동자, 노력 동원되는 학생, “돌격대” 동원 대상자², 해당국 내 감옥 및 로동단련대의 수감자, 인민반³이나 여성동맹 및 청년동맹 등 단체를 통해 동원되는 이들, 해외노동자 등이 포함된다. 남녀 성인, 때로는 아동이 동원되는 작업은 주로 건설업, 농업, 벌목업, 광업 부문으로, 노동 강도가 세고 고되며 위험한 작업이 빈번하다.
4. 본 보고서는 인권이사회에서 위임권한을 부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가 2014년 2월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⁴ 본 보고서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면담한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을 상당수 인용하여, 강제노동 피해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피해

1 2014년 2월 7일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상세보고서(A/HRC/25/CRP.1)” 문단 801 및 문단 1082 등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2020년 10월 14일 제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총회 보고서(A/75/388)” 문단 21-36도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2 돌격대라는 용어는 고구적으로 생산적이며 열정적인 노동이라는 표현으로부터 나왔다. 돌격대는 여단, 대대, 중대 등 군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기도 하며, 국가에서 추진하는 특정 사업을 완수하도록 임시로 결성된 노동자 집단의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3 인민반이라는 용어는 “주민 집단”을 뜻하는데, 이웃간 상호 감시가 이뤄지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의무적으로 모두가 인민반에 속하게 된다.

4 모든 정보는 보안이 유지된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중앙 정보 및 증거 저장소에 저장된다. 이는 인권이사회 결의 A/HRC/RES/34/24(2017년 4월 3일)에 따른 것으로, 해당 내용은 문단 12에 명시되어 있다.

자가 자신의 경험과 고통을 들여다봄으로써 이들이 겪은 인권 침해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확대 되길 기대한다. 보고서 말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강제노동 관행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지, 아울러 국제공동체가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권고를 제시한다.

II. 강제노동 금지: 국제법적 프레임워크

5. 국제인권법은 경제 생산, 교환 및 분배에 있어서 국가가 특정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⁵ 다만 국가가 관할권 하의 국민들에게 권한을 발휘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 규정한다. 가령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여 노예제, 예속 상태 및 강제노동으로부터 모두가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공정한 임금, 합당한 범위 내의 근무 시간 등을 포함하여 모두가 공정하고 유리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⁶

i) 강제노동 금지

6. 모든 이들은 노동권을 보장받는다. 이는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수락한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릴 기회를 포함하며, 어느 누구도 강제 또는 강요된 노동을 하도록 요구받아서 안된다.⁷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을 비준했기에 이러한 권리를 존중, 보호 및 충족시킬 의무가 있다.
7.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이행을 살피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의 견해에 따르면 “강제 또는 강요된 노동”이라는 용어는 한편으로는 형사적 제재의 수단으로 (특히 강압적이거나 착취적이거나 혹은 지독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만드는 것부터, 개인이 지시받은 작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조건에서 이뤄지는 정도가 덜한 노동까지의 범위를 아우른다. 또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8조 3(c)(iv)항에서 통상적인 시민의 의무에 속하는 작업 또는 역무는 강제 또는 강요된 노동이라는 용어에 포함

⁵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제2조 1항과 관련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3호 (당사국 의무의 본질) 문단 8.

⁶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제7조 및 제10조 3항,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8조, 아동권리협약 제32조,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노동조합을 구성할 권리를 인정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제8조.

⁷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8조 3항,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제6조 1항 및 제7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18호 문단 9,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e(i)항, 강제 및 강요된 노동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제29호) 및 그 의정서(2014년),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05호 제1조 및 2조,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즉각 철폐할 것에 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1999년, 제182호) 제1조 및 제3조 (a)항,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11조 2, 3, 4항, 세계인권선언 제4조, 23조 및 24조, 국제노동기구가 (제86차 국제노동총회(1998)에서 채택하고 제110차 총회(2022)에서 개정한)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에 명시한 다섯 가지 원칙 중 두 가지는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강요된 노동 철폐” 및 “아동 노동의 효과적 철폐”이다. 해당 원칙은 국제노동기구협약 제29호 또는 105호를 비준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에게 적용 가능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현재까지 국제노동기구 헌장을 수용하지 않았고, 따라서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이 아니다.

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의 견해에 따르면 통상적인 시민의 의무에 해당하려면, 해당 노동은 최소한 (a) 예외적인 조치여서는 안되며, (b) 징벌적인 목적 또는 효과를 띠어서도 안되고, (c)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에 비춰봤을 때 정당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⁸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은 아니지만, 국제노동기구 협약은 강제노동 정의와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출처이다.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29호 제2조 1항은 강제 또는 강요된 노동을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동이나 역무”로 정의한다. 강제노동은 공식 경제 또는 비공식 경제 부문인지와는 무관하게 모든 형태의 고용에서 금지된다.⁹ 가령 국가 당국이 주민을 동원해 농작물을 수확하도록 강제하거나¹⁰ 특정 산업 현장으로 강제 파견하거나 건설 작업에 동원하는 등의 사례도 포함하는데, 이 때 처벌의 위협으로 인해 주민이 해당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다.¹¹ 강제노동 금지의 국가 주도의 강제노동 뿐 아니라 인신매매 등의 결과로 민간 부문에서 이뤄지는 강제적인 업무에도 적용된다.¹²
9. “처벌의 위협”은 개인의 의사에 반해 노동을 부과하는 강압의 방법을 뜻한다. 이는 형벌 뿐만 아니라, 고용인이 신분증과 여행증명서를 압수당하거나, 폭력의 위협을 받거나,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거나 감금당하거나 임금 체불 또는 지급 중지, 권리 및 기타 특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¹³ 강압은 노동자가 제시된 일자리를 수락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으로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일을 시작한 이후 채용 당시 합의된 업무가 아닌 것을 하도록 강제되는 방식으로, 혹은 일을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노동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바탕으로 자유 의사에 따른 동의를 거치지 않은 노동은 비자발적인 노동이라고 본다. 따라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바탕으로 자유 의사에 따른 동의를 거치지 않고 동시에 강압적으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강제노동에 해당된다.¹⁴
10. 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 폐지 협약(1975년, 제105호)은 강제노동의 정의를 더욱 자세히 설명하는데, 제1조는 당사국이 다음에 규정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⁸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communication(개인통보) No. 1036/2001, CCPR/C/85/D/1036/2005.

⁹ 국제노동기구, Profits and Poverty – The Economics of Forced Labour(강제노동의 경제학—수익과 빈곤), 제네바: 2014, 5쪽.

¹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투르크메니스탄 관련 최종견해 (E/C.12/TKM/CO/2) 문단 23–24,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의 투르크메니스탄 관련 최종견해 (CCPR/C/TKM/CO/2) 문단 27, 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 조사 편람(Hard to see, harder to count)(2012) 168쪽.

¹¹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18호 문단 34.

¹²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팔레르모 의정서).

¹³ 국제노동기구, Combating forced labour – A handbook for employers and businesses(강제노동 철폐—고용주와 사업체를 위한 편람), 제네바: 2008 5–12쪽.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가 2005년 10월 31일 채택한 Communication(개인통보) No. 1036/2001 (Faure v. Australia) 문단 7.5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강제 또는 강요된 노동”이라는 용어의 경우, 개인의 범죄에 대한 처벌로 특히 강압적이거나 착취적이거나 혹은 지독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만들거나, 또는 개인이 지시받은 작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개인에게 처벌을 가하는 조건에서 이뤄지는 노동까지 여러 형태의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았다.”).

¹⁴ Global Estimates of Modern Slavery: Forced Labour and Forced Marriage(현대판 노예제에 대한 전세계 추정치: 강제노동과 강제혼), 국제노동기구, Walk Free(워크프리재단), 국제이주기구, 2022년 9월, 14쪽.

- (a) 정치적 강압이나 교육의 수단이나 정치적 견해 또는 기존의 정치·사회·경제 제도에 사상적으로 반대하는 견해를 가지거나 표현하는 것에 대한 제재
- (b) 경제발전을 위하여 노동을 동원하고 이용하는 수단
- (c) 노동규율의 수단
- (d)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
- (e) 인종·사회·민족 또는 종교적 차별대우의 수단

11. 어떠한 관행이 강제노동에 해당하는지 평가하는 데 참조하도록 국제노동기구는 강제노동에 대한 지표를 마련했다. 해당 지표는 다음과 같다.

- 취약함 악용
- 신분증 압수
- 기만
- 임금 체불
- 이동 제한
- 채무에 따른 예속
- 소외
- 착취적인 근로 및 거주 환경
- 신체 폭력 및 성폭력
- 과도한 초과근무
- 협박¹⁵

“특정 상황에서는 단 하나의 지표만 존재하더라도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경우일 수 있다. 그 외 경우라면 여러 지표들이 함께 드러날 때 강제노동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복수의 지표가 존재하는지 살펴야 한다. 대체로 11개의 지표는 강제노동 상황을 나타내는 주요 요소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개별 노동자가 강제노동 범죄의 피해자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¹⁶

12.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지침은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에 따라, 강제 및 강요된 노동을 금지해야 하는 국가의 인권 의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81년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의 당사국으로 가입했다. 해당 규약 제8조 3(a)항은 “어느 누구도 강제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언급하며, 이어서 다음을 명시한다.

“(b) 3(a)항의 규정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 중노동을 수반한 구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에서, 권한있는 법원에 의하여 그러한 형의 선고에 따른 중노동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c) 이 항의 적용상 “강제노동”이라는 용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i) (b)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작업 또는 의무로서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의하여 억류

¹⁵ 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 지표, 2012.

¹⁶ 상동.

되어 있는 자 또는 그러한 억류로부터 조건부 석방 중에 있는 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

- (ii) 군사적 성격의 의무 및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국민적 의무¹⁷
- (iii) 공동사회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난시에 요구되는 의무¹⁸
- (iv) 시민으로서 통상적인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 또는 의무

이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29호의 제2조 2항에서 명시하는 예외 사항과 유사하다.¹⁹

13. 본 보고서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2015년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탈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에서 수집한 진술을 제시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제도적으로 이뤄지는 강제노동이 앞서 언급한 예외적으로 허용가능한 사례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해당 국 내 강제노동에는 국가 배정 직장, 군 징집, 돌격대 배치, 인민반 동원뿐 아니라 구금 시설 내 노동과 해외 노동이 포함된다.

14. 아동은 강제노동에 동원되기 쉽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발생한 훼손이 불가능한 의무를 포함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한 특정한 인권 의무를 갖는다.²⁰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을 모두 아동으로 정의한다. 아동권리 협약 제32조는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협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²¹ 국제노동기구의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1999년, 제 182호) 또한 18세 미만의 모든 이들을 아동이라 정의하며,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이라는 용어가 “모든 형태의 노예제 또는 노예제와 유사한 관행으로서, 아동매매 및 밀매, 채무를 담보로 한 노동, 농노 및 무력분쟁에 이용하기 위하여 아동을 강제 또는 의무적으로 징용하는 것을 포함한 강제 및 의무 노동”뿐 아니라, “수행되는 작업의 성격 및 환경상 아동의 건강, 안전 및 도덕성을

¹⁷ 국제노동기구 General Survey(일반조사), Eradication of forced labour(강제노동 철폐), 2007, 문단 43-46 및 문단 89-95 .

¹⁸ 국제노동기구 General Survey(일반조사), Eradication of forced labour(강제노동 철폐), 2007, 문단 62-64 참조.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11조 (4)항.

¹⁹ 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 협약(제29호) 제2조 (2)항: “이 협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강제노동’이라는 용어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a) 전적으로 군사적 성격의 작업에 대해서 의무적인 병역법에 의해서 강요되는 노동 또는 의무, (b) 완전한 자치국 국민의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노동 또는 의무, (c) 공공기관의 감독 및 관리하에서 행해지며, 사인, 회사 또는 단체에 고용되거나 또는 그 지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법원 판결의 결과로 강요되는 노동 또는 의무, (d) 긴급한 경우, 즉 전쟁의 경우나 화재, 홍수, 기근, 지진, 극심한 전염병이나 가축 전염병, 짐승이나 곤충류 혹은 식물류의 해로운 물질에 의한 침입, 기타 일반적으로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상황과 같은 재해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강요되는 노동 또는 의무, (e) 공동체의 직접적 이익을 위하여 주민에 의해 수행되고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소규모의 공동체 의무. 다만, 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공동체의 직접적 대표자는 이러한 의무의 필요성에 대하여 협의 받을 권한을 가져야 한다.”

²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에는 예외조항이 없기 때문에 긴급 상황을 포함하여 아동 권리는 언제나 적용된다고 간주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제29호의 각주 5번.

²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음의 제10조 3항을 포함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국제 규약에 따른 법적 의무가 있다. “가문 또는 기타 조건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어린이와 연소자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와 원조의 조치가 취하여진다. 어린이와 연소자는 경제적, 사회적 착취로부터 보호된다. 어린이와 연소자를 도덕 또는 건강에 유해하거나 또는 생명에 위협하거나 또는 정상적 발육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노동에 고용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당사국은 또한 연령제한을 정하여 그 연령에 달하지 않은 어린이에 대한 유급노동의 고용이 법률로 금지되고 처벌될 수 있도록 한다.”

해칠 가능성이 있는 작업”도 가리킨다고 명시한다.²²

ii) 노예제 및 예속 상태 금지

15. 강제노동 문제는 국제인권법상 노예제 및 예속 상태를 금지하는 국가 의무도 상기시킨다. 강제노동은 예속 상태의 일종으로 여겨지며, 노예제의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가 흔하다.²³ 그러나 국제법상 강제노동에는 노예제나 예속 상태와 구별되는 요소가 존재한다. 비자발성은 노예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유권은 노예제의 요건에 해당된다.²⁴ 반대로 정의상 강제노동은 비자발적이지만 반드시 소유권이 드러날 필요는 없다.²⁵ 자발적으로 수행하게 된 노동이라 하더라도 고용인이 노동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자유가 없다면 강제노동에 해당된다.
16. 노예 협약(1926년)은 제1조에서 노예제란 “소유권 행사에 부속되는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지위 또는 상황”이라고 정의한다. 세계인권선언(1948년) 제4조는 “어느 누구도 노예 상태 또는 예속 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8조는 “어느 누구도 노예 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 제도 및 노예 매매는 금지된다”고 말하며, 동 규약 제4조 (2)항은 해당 조항은 훼손이 불가하다고 명시한다. 국제관습법 또한 노예제 및 노예제와 같은 관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국제사법재판소도 노예제로부터의 보호를 “인권법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두에 대해(erga omnes) 준수해야 하는 의무”에 해당하는 사례로 언급한다. 즉,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의무이다.²⁶
17. 노예제 및 예속 상태는 차별에 뿌리를 두며, 여러 인권을 부정하는 상황을 동반한다. 가령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 신체적 무결성에 대한 권리,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자유로이 이동할 권리, 노동에 대한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노조에 대한 권리, 사회 보장에 대한 권리,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보건 및 교육에 관한 권리 등이 있다.²⁷
18. 현대판 노예 제도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이 i) 한 명 혹은 복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자신의 일부 혹은 전체 권한 혹은 소유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해당인을 노예로 종속시킨 경우, ii) 강압을 통해 사람이 작업 또는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동시에 여러 형태의 자유를 심각

²² 국제노동기구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1999년, 제182호), 제2조 및 3조.

²³ 현대판 노예제 특별보고관 보고서 A/HRC/24/43 문단 32. David Weissbrodt 과 Anti-Slavery International이 작성한 Abolishing Slavery and its Contemporary Forms (노예제 및 현대판 노예제의 철폐) (HR/PUB/02/4), 문단 36.

²⁴ 유럽인권재판소, M. and Others v. Italy and Bulgaria 사건, 문단 149. (“유럽인권재판소는 Siliadin 사건에서 유럽인권협약 제4조에 따른 “노예제”의 범위를 고려할 때 노예 협약(1926)에 명시된 전통적인 노예제의 정의를 참조했다. 즉, 개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고 해당 개인의 지위를 “대상”으로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Siliadin v. France (no. 73316/01), 문단 122, ECHR 2005-VII”).

²⁵ 유럽인권재판소, M. and Others v. Italy and Bulgaria 사건, 문단 161-62.

²⁶ Barcelona Traction, Light and Power Co, Ltd. (Belgium v. Spain),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1971년 2월 5일.

²⁷ 현대판 노예제 특별보고관 보고서 A/HRC/15/20 문단 23-24, 문단 36-38, 문단 48-50, 문단 69-72. David Weissbrodt 과 Anti-Slavery International이 작성한 Abolishing Slavery and its Contemporary Forms (노예제 및 현대판 노예제의 철폐) (HR/PUB/02/4) 문단 26-29.

하게 제한하는 식으로 해당인을 예속 상태에 놓은 경우,²⁸ iii) 국가공무원이 한 명 혹은 복수의 사람을 “현대판 노예”의 상태에 놓거나 직·간접적으로 이러한 관행에 참여, 선동, 동의 또는 묵인한 경우에 국제인권법 위반에 해당한다.²⁹

19. 아울러 국가가 민간 행위자 혹은 단체에 의한 노예제 및 노예 상태를 방지³⁰ 및 금지하는데 적절한 조치를 모두 취하지 않은 경우, 국제인권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때 적절한 조치란 현상의 범죄화, 일관된 법률 적용, 피해자 파악, 가해자 조사 및 소추, 위험 요소 모니터링 및 해소와 동시에 피해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³¹
20. 현대적 맥락에서 노예제와 예속 상태 간 경계는 분명하지 않고 한 개인에게 가해지는 통제 및 권한의 정도에 크게 좌우된다. 노예제는 소유권의 요건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 “전세계적으로 폐지된 법적 소유권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 타인을 대상으로 소유권과 유사한 혹은 소유권에 부속되는 권한을 행사하는 상황 속에 생활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³² 소유권에 부속되는 권한이란 함은 “한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박탈하는 방식으로 해당인을 통제하는 것으로, 동시에 해당인을 이용, 관리, 수익 목적으로 활용, 이전 혹은 제거하는 등의 방식으로 착취하려는 의도를 가진 경우로 이해할 수 있다.”³³ 이러한 맥락에서 통제는 소유와 마찬가지로 일 수 있다. 개인에 대한 통제가 특정 기간 동안 물건을 통제하는 식으로 이뤄질 수 있는데, 그 기한은 노예화 대상 개인의 관점에서는 가늠이 어렵다.³⁴
21. 반면 예속 상태의 경우 노예제와 여러 특징을 공유하지만, 소유권 혹은 소유의 요건은 필요치 않다. 예속은 가사 노동이 제공되는 상황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데, 가령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과하게 의존적이어서 착취의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³⁵ 여기에 더해 “의존성은 경제적 요인, 이동의 자유 부재 및 신체 및 정신적 학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³⁶

²⁸ 앞선 각주에 언급된 *Siliadin v. France* 사건 문단 124: “해당 사안에 대한 판례법을 고려하여 유럽인권협약의 목적상 ‘예속 상태’는 감압에 의해 역무를 제공하도록 한 의무를 의미하며, 상기 언급된 ‘노예제’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

²⁹ 현대판 노예제 특별보고관 보고서 A/HRC/36/43 문단 12.

³⁰ 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협약(1930년)의 의정서 P029(2014년) 및 강제노동 (추가 조치) R203 권고, 2014.

³¹ 현대판 노예제 특별보고관 보고서, A/HRC/36/43, 문단 12. 상동.

³² 상동, 문단 9. 노예제, 노예 무역 및 기타 형태의 예속 상태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E/2357 (1953년 1월 27일) 28쪽. 해당 사무총장 보고서는 소유권에 따라오는 권한을 여섯 가지로 설명했다: “1. 노예 상태에 있는 개인이 구매의 대상으로 취급된다. 2. 주인이 노예 상태의 개인을 절대적 방식으로, 특히 작업 역량을 사용할 수 있는데, 법이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제한 외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 3. 노예 상태에 있는 개인의 노동 결과물이 노동의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없이 주인의 재산이 된다. 4. 노예 상태에 있는 개인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될 수 있다. 5. 노예 상태가 영속적이다. 즉, 노예 상태에 놓인 개인의 의지로 노예 상태를 중단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6. 노예 상태에 있는 개인이 노예 상태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 후손도 노예 상태에 놓이게 된다.”

³³ Members of the Research Network on the Legal Parameters of Slavery (노예제의 법적 기준에 관한 연구 네트워크 구성원), “2012 Bellagio Harvard Guidelines on the Legal Parameters of Slavery (2012 노예제의 법적 기준에 관한 벨라지오 하버드 지침)”. J. Allain (ed.), *The Legal Understanding of Slavery: From the Historical to the Contemporary* (노예제에 대한 법적 이해: 과거부터 현대까지)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지침 2.

³⁴ 상동, 지침 3.

³⁵ 현대판 노예제 특별보고관 보고서 A/HRC/39/52, 문단 13.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 최종견해: 카자흐스탄, CCPR/C/KAZ/CO/2, 문단 36(b): “가사노예, 담보노동, 강제혼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노예제 및 유사 노예제 관행은 당사국 법에서 세부적으로 정의하고 범죄화했다.”

³⁶ 상동, 문단 14.

22. 본 보고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강제노동이 어떤 경우에는 예속 상태와 노예제의 특징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개인에 대해 “소유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동이 제한되고, 24시간 감시가 이뤄지는 구금 시설, 돌격대, 해외 노동, 또한 일부 군 징집시 강제노동 등의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iii) 국제법상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노예화

23. 국제인권법상 노예제와 예속 상태 금지와 더불어 구금 시설 내 강제노동 관행을 고려할 경우, 국제형사법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특히 반인도범죄로서의 노예화에 해당할 수 있다.
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당사국은 아니지만, 로마 규정은 모든 국가에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는 국제관습법을 반영한다. 로마 규정은 1926년과 1956년 노예 협약에 명시된 노예제 정의를 고수하는데, 노예화는 “사람에 대한 소유권에 부속된 어떠한 또는 모든 권한의 행사 ...”라고 정의한다.³⁷ 강제노동은 노예화에 해당할 수 있다.³⁸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항소재판부는 Kunarac 판결에서 국제 범죄로서의 노예화의 요소로 “개인의 이동 통제, 신체적 환경 통제, 심리적 통제, 탈출을 방지 혹은 단념하도록 하는 조치, 무력, 무력의 위협 혹은 강압, 기간, 독점권 행사, 잔인한 대우 및 학대, 성적 통제, 강제노동”을 포함시켰다.³⁹
25. 국제형사재판소가 발간한 “범죄구성요건”에 따르면,⁴⁰ 다음의 경우를 “반인도범죄”로서의 노예화라고 본다.

1. 가해자는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에 대한 소유권에 부속된 어떠한 또는 모든 권한을 그 사람을 구매, 판매, 제공 또는 물물교환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자유를 박탈하는 방법으로 행사했다.⁴¹
2. 해당 행위가 민간인 집단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으로 자행된 공격의 일부로 행해졌다.
3. 가해자는 민간인 집단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환인 점을 인식했거나 이를 의도했다.

³⁷ 제7조 (2)(c)항, 반인도범죄는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범하어진 행위이다.” 해당 정의는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의 다음 판례에서도 그대로 사용된다. Kunarac, ICTY T. Ch. II (2001년 2월 22일) 문단 539 및 Krnojelac, ICTY T. Ch. II (2002년 3월 15일), 문단 353.

³⁸ <https://www.icc-cpi.int/sites/default/files/Publications/Elements-of-Crimes.pdf>, 범죄구성요건, 국제형사재판소(2013), 각주 11호.

³⁹ Kunarac et al., ICTY A. Ch., 2002년 6월 12일, 문단 119.

⁴⁰ <https://www.icc-cpi.int/sites/default/files/Publications/Elements-of-Crimes.pdf>, 범죄구성요건 4쪽.

⁴¹ 이러한 자유의 박탈은 일부 상황에서 강제노동을 요구하거나 혹은 개인을 노예 상태로 낮추는 것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노예제, 노예무역, 노예제와 유사한 제도와 관행 철폐에 관한 보충 협약(1956년)에 정의되어 있다. 범죄구성요건으로 언급된 행위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를 포함한다고 볼 수도 있다.

26.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판례에서 볼 수 있듯, 노예화는 흔히 강제노동을 수반한다.

“고문 없이도 노예제가 존재할 수 있다. 노예에게 제대로 된 의식주가 보장될 수는 있으나, 합법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강제로 구속된 상태로 자유를 박탈당했다면 여전히 노예이다. 학대의 모든 증거를 차치하고, 굶주림, 구타 및 기타 야만적인 행위에 눈감아주더라도, 보상이 없는 강제적인 노동에 처해있다는 점에서 노예라는 현실은 자명하다. 자애로운 노예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비자발적인 예속 상태는 인도적 대우를 통해 조절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노예제이다.”⁴²

27. 캄보디아 특별재판소의 판례는 또한 개인에 대한 소유권이 반인도범죄로서의 노예화의 기본적인 요건라고 강조한다.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감옥에서 이뤄지는 강제노동 제도와 분명히 유사점이 있다.

“재판부는 반인도범죄로서의 노예제가 프놈 크라올 보안소(Phnom Kraol Security Centre)에서 자행됐다고 결론냈다. 이는 당의 이득을 위하여 수감자를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엄격한 의무 노동이 제도적으로 존재했고, 수감자가 보상을 받았는지 또는 일을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부재하며, 수감자는 앙카르(Angkar)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죽음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며 정서적 학대를 당했고, 보안소 관계자는 시설 내 수감자 이동을 결정하고 수감 기간 동안 이들의 물리적 환경을 통제하고, 수감자의 도주를 예방하거나 저지하고자 항상 감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수감자가 일을 할지 말지를 선택하여 이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없게 만들었다. 재판부는 위 기술한 상황으로 보건대, 보안소 관계자가 수감자에 대해 가진 소유권에 부속된 권한을 행사했기에 노예제라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고, 아울러 강제노동 제도를 집행한 수단과 수감자의 권리를 계속해서 예속시킨 점에서 이러한 권한을 의도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범행 의도가 있었다고 결론내렸다.”⁴³

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조사위원회가 적용한 노예제의 정의는 로마 규정에서 제시하는 노예화 범죄의 정의와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와 시에라리온특별재판소의 판례를 통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개인에 대한 소유권에 통상적으로 부속되는 어떠한 또는 모든 권한의 행사는 노예제에 해당될 수 있다.⁴⁴ 강제노동의 추출이 만약 피해자의 법적 인격을 효과적으로 파괴하는

⁴² Kunarac 항소 판결 문단 123, US v Oswald Pohl and Others 사건 인용, 1947년 11월 3일 판결, Trials of War Criminals Before the Nuremberg Military Tribunals under Control Council No. 10, Vol 5, (1997) (뉘른베르크 군사 법정에서 열린 전범 대상 재판) (이후 “Pohl Judgment”), 958–970쪽.

⁴³ 항소 판결, Case 002/02, ECCC, 23. 12.2022, Doc. No. F76, 문단 823.

⁴⁴ 로마 규정, 제7조 (2)(c)항; Prosecutor v. Kunarac et al, IT-96-23/IT-96-23/1,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2001년 2월 22일 판결, 문단 539; Prosecutor v. Kunarac, Kovac and Vukovic, IT-96-23-A, 2002년 6월 12일,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항소부, 문단 117; Prosecutor v Taylor, SCSL-03-01-T,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 재판부, 2012년 5월 18일 판결, 문단 446.

가중요인을 동반한 경우, 노예화에 해당될 수 있다.⁴⁵ 구금 혹은 감금, 피해자의 자율성에 대한 통제 정도, 도주를 예방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수단 등 선택의 자유 혹은 이동의 자유, 무력에 대한 공포, 권력 남용, 강제노동의 기간, 조건 및 강도, 피해자의 취약 정도, 가혹한 대우 및 학대 노출, 성생활의 강력한 통제 등이 관련된 상황이 될 수 있다.”⁴⁶

iv) 강제노동과 관련된 기타 인권 침해

29.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강제노동을 고려할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존중, 보호 및 실현할 의무가 있는 여러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를 살펴야 한다.⁴⁷ 강제된 작업의 종류, 해당 작업이 수행되는 환경, 노동자 대우와 관련된 권리를 말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3조는 노동과 관련된 권리를 제시한다.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에 더하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에서 노동할 권리,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받을 권리, 노동자 자신과 그 가족이 존엄성 있는 삶을 살아가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포함한다. 이들 권리 자체도 의미가 있으며, 또한 개인을 강제노동과 노예제로부터 보호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띤다.

3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1981년 비준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제6, 7, 8조는 앞서 언급한 권리를 좀 더 상세하게 다룬다. 제6조는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당사국은 해당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직업의 지도, 훈련 계획을 포함한 제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다. 제7조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 조건을 누릴 권리를 상세히 설명하는데, 공정한 임금,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조건, 동등한 승진 기회, 휴식·여가 및 근로 시간의 합리적 제한, 정기적인 임금 휴일을 언급한다. 제8조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 및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자신이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를 설명한다. 이러한 노동조합은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활동할 권리가 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22조에 명시된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일부로 여겨진다.

3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앞서 언급한 인권 의무를 상당 부분 국내법에 반영했고, 이는 별첨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보고서에 제시된 진술이 묘사한 전국적으로 제도화된 국가 주

45 범죄구성요건 참조,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당사국 총회, 1차 회기, 2002년 9월 3-10일, 제7조 (2)(c)항, 각주 10; Prosecutor v. Kunarac et al, IT-96-23/IT-96-23/1,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부, 2001년 2월 22일 판결, 문단 541; Prosecutor v. Kunarac et al, IT-96-23-A, 2002년 6월 12일,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항소 재판부, 문단 117; Prosecutor v. Taylor, SCSL-03-1-T,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 재판부, 2012년 4월 26일 판결, 문단 448.

46 Prosecutor v. Kunarac et al, IT-96-23-A,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항소 재판부, 2002년 6월 12일 판결, 문단 119; Prosecutor v. Kunarac et al, IT-96-23/IT-96-23/1,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부, 2001년 2월 22일 판결, 문단 542 및 543; Prosecutor v. Taylor, SCSL-03-1-T,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 재판부, 2012년 4월 26일 판결, 문단 447. 조사위원회 보고서, A/HRC/25/63, 문단 1048.

47 강제노동 요소를 고려하는 데 있어, 유럽 인권 제도는 개인의 의지에 반하여 이뤄지는 작업 요소에 더하여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수반하는 작업으로 설명한다. 가령 X v. Federal Republic of Germany를 참조(Application No. 4653/70), 유럽인권위원회(1974).

도의 강제노동의 경우 현실에서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 조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특징을 드러낸다.⁴⁸

⁴⁸ 국제 및 국내 법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의 별첨 1과 별첨 2에 설명되어 있다.

III. 방법론

32. 본 보고서는 2015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이탈해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강제노동 피해자 및 목격자를 대상으로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수행한 심층 면담 183건을 포함하여 여러 정보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공개한 정보, 유엔 인권조약체 최종견해와 비정부기구 발간 보고서를 포함하여 공개된 정보도 참고했다.
33.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본 보고서를 위한 모든 면담 및 의견 청취 활동을 자체적인 표준 관행 및 방법론에 따라 수행했다. 해를 끼치지 않는 원칙을 적용하고 모니터링 및 조사 시 피해자 중심 접근법을 적용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면담 수행 시 성인지 감수성과 연령을 고려하여 접근했고, 정보 출처의 기밀을 엄격히 유지하며 면담 전·후 및 면담 중 필요한 모든 보호 규정을 적용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본 보고서에 인용된 모든 면담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 면담대상자가 제시한 정보를 공개 보고서에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묻고 동의를 구했다. 보고서 본문에 포함된 피해자 인용구에 더하여, 별첨 3은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2015년에서 2023년 사이 면담한 이탈자 진술에서 강제노동과 관련한 내용을 발췌하여 실었다.
3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 접근이 불가하여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강제노동 및 기타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와 진술을 확증하거나 추가적으로 수집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다. 다만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면담대상자의 신뢰성 및 신빙성,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 유사한 사실관계 및 유형과 관련된 진술간 일관성, 기타 출처로부터 수집한 정보와의 일관성을 평가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독립적으로 수행한 183개 면담이 가해혐의자 및 방법에 있어서 강제노동이라는 일관된 양상을 드러내며 일부 사례에서는 반인도범죄로서의 노예화에도 이를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 때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기타 단체가 수집한 여러 정보와도 견주어 검토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의 기준을 적용하여 결론지었다.
35.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본 보고서 발간 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보고서를 전달하여 사실 관계에 대한 견해를 구했다.

IV.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강제노동 유형

i. 구금 시설 내 노동

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감옥 및 기타 구금 시설은 해당국 경제가 굴러가도록 돕는 강제노동을 대량으로 제공한다. (노동을 통해 구금자가 저지른 “경범죄”에 대해 “교양”을 시키는 의도로 운영되는) 노동단련대, (노동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구금자를 “교화”시키는 의도로 운영되는) 교화소, (미결구금시설인) 집결소, (정치범 수용소인) 관리소에 구금된 이들의 삶은 강제노동으로 점철되어 있다.⁴⁹
37.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불법 월경”죄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강제 송환된 이후 구금된 채 강제노동을 수행해야 했던 100명 이상의 여성과 면담을 진행했다. 불법 월경죄로 구금되어 강제노동을 수행한 여성이 남성보다 비율적으로 더 많은데, 이는 기혼 여성이 보다 자유롭게 국가가 배정한 직장을 그만두고 소규모 상행위를 통해 가계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혼 여성은 국경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좀 더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경을 넘는 상당히 위험한 이동이 가능한 기회가 보다 많으며, 강제결혼이나 매춘을 목적으로 한 인신 매매를 당할 위험에도 노출된다.⁵⁰ 여성은 구금 상태에서 성폭력을 포함한 젠더에 따른 폭력과 젠더에 따른 신체 및 언어적 폭력을 겪고, 생리대를 포함하여 여성 위생에 필요한 시설 및 물품 접근이 거부되며, 강제 낙태를 포함하여 성 및 재생산 보건 및 권리가 침해되고, 젠더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⁵¹
3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과 행정법은 노동을 통한 “교양”과 “교화”를 하도록 한다.⁵² 국제 표준에 따르면, 노동은 수감자의 교정과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출소 후 다시 지역사회에 적응

49 “The Parallel Gulag: North Korea’s ‘An-jeon-bu’ Prison Camps” (또 다른 수용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부 감옥), 북한인권위원회, 2017; “The Hidden Gulag Second Edition: The Lives and Voices of ‘Those Who are Sent to the Mountains’” (감춰진 수용소: ‘산으로 추방된 사람들’의 삶과 목소리), 북한인권위원회, 2012.

50 조사위원회 보고서, A/HRC/25/63, 문단 365, 377, 491.

51 구금 시설 내 여성이 겪는 젠더에 따른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분석 및 피해자 진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구금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여전히 고통스럽다 ...’를 참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2020년 7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 최종견해, 2017년 11월 8일, CEDAW/C/PRK/CO/2-4, 문단 27.

5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2015) 제2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2011) 제17조.

하여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이다.⁵³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넬슨만델라규칙)은 오늘날 수감자 처우에 있어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으로 기능한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수감자에게 “노동 및/또는 사회 복귀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의사 또는 그 밖의 자격을 가진 보건의로 전문가가 수감자의 신체적·정신적 적합성이 있는 것으로 확정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⁵⁴ 실제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수감자에게 노동 접근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인권 침해 사례로 들었다.⁵⁵

39. 사법부 판단으로 구금된 개인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은 강제노동에 해당되지 않는다.⁵⁶ 가령 청소나 요리와 같이 수감 시설 내 일상적인 작업이나 목표가 설정된 직업 교육과 같이 수감자의 사회 복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수감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허용가능하다.⁵⁷ 또한 국제 인권 표준은 범죄에 대한 합법적 형벌로 “중노동”을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⁵⁸

40.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수감 시설 내 강제노동을 금지하도록 권고⁵⁹하는데, 유죄 선고를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정 조치 및 형벌도 이에 해당된다.⁶⁰ 넬슨만델라규칙은 교도 작업이 “성질상 고통을 주는 것에서는 안된다”고 언급하는데, 이러한 작업으로 인해 초래되는 신체 및 정신적 고통과 슬픔을 말한다.⁶¹ 따라서 구금 시설 내 강제노동 금지와 관련하여 국가가 국제 인권 의무를 어겼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해당 작업 자체와 처우 및 조건이 고문,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해당하는 행위인지를 살피도록 해야 한다.⁶² 국제법상

⁵³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넬슨만델라규칙, 규칙 4(1)).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은 1957년 유엔 총회에서 처음 채택되고, 이후 2015년 넬슨만델라규칙으로 개정 및 채택됐다. 해당 규칙은 국가가 구금 시설 내 처우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참조하는 기준으로 여겨지며, 수감자 처우를 살피고 점검할 때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 비록 국제관습법의 적용은 예외로 하더라도 넬슨만델라규칙 자체는 국가에 구속력을 발휘하지 않지만,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국제 수감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넬슨만델라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확인했다: 2010년 10월 25일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가 채택한 의견으로 Communication(개인통보) No. 1018/2008, McCallum v South Africa 사건, 문단 6,8 (“자유를 박탈당한 이들은 무엇보다도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에 근거하여 대우받아야 한다.”). 2005년 3월 17일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가 채택한 의견으로 Communication(개인통보) No. 1134/2002, Fongum Gorji-Dinka v Cameroon 사건, 문단 5,2; 2007년 7월 20일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가 채택한 의견 Communication(개인통보) No. 1173/2003, Benhadj v Algeria 사건, 문단 8,5; 1997년 7월 28일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가 채택한 의견으로 Communication(개인통보) No. 632/1995, Potter v New Zealand 사건, 문단 6,3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해석에 유의미한 지침”이라고 해당 규칙을 언급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 최종견해: 영국, CCPR/C/79/Add.55, 문단 24.

⁵⁴ 넬슨만델라규칙, 규칙 96(1).

⁵⁵ Communication(개인통보) No. 797/1998, Lobban v Jamaica 사건, 2004년 3월 16일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 채택한 의견, 문단 8,1.

⁵⁶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8조 (3)(c)(i)항; 강제 및 강압적인 노동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1930년, 제29호), 문단 2(2)(c).

⁵⁷ M. Nowak, UN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CPR Commentary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일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 해설), (NP Engel: Kehl, 2005) 205쪽.

⁵⁸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8조 (3)(b)항.

⁵⁹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시리아, E/C.12/1/Add.63, 문단 34.

⁶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아제르바이잔, E/C.12/1/Add.104, 문단 45.

⁶¹ 넬슨만델라규칙, 규칙 97(1).

⁶² 상동.

이런 행위의 금지는 절대적이며 어떠한 경우에서도 예외(derogation)로 여겨질 수 없다.⁶³

41. 국제형사법도 어떤 작업이 강제노동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데 구금 시설 내 처우와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령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항소재판부는 Krnojelac 판결에서 심각하게 과밀화된 환경, 개탄스러운 위생 상태, 충분치 않은 식량, 잠긴 문, 빈번한 구타, 정신적 학대, 가혹한 거주 환경으로 인해 수감자가 작업에 동의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에 강제노동을 당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봤다.⁶⁴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2015년부터 수집한 다수의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해당국 내 구금 시설 환경과 처우는 앞서 언급한 상황과 유사하다.
4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구금 시설에서 수감자를 징계하거나 작업 할당량을 맞추도록 강요하고자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는 사례가 앞서 언급한 기준을 어긴 경우이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러한 폭력을 언급하는 피해자 진술을 기록한 바 있다.

“옥수수나 고추를 심는 등 수작업을 했다.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고 땅을 파본 적도 없어서 속도가 느렸다. 그랬더니 욕을 하고 처벌을 하고 심지어 때리기도 했다. 항의할 수 없었다. 맞아도 참는 수밖에 없어서 맞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일은 힘들었는데, 일하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 농작물을 키우는게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처벌만이 목적이었다. 9월이 지나면 땅이 얼고 해가 나지 않는다. 언 땅을 파내고 다시 묻었다. 고통스러웠다. 내가 작업을 안하거나 느리면 나를 때렸지만, 작물은 자라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다.”⁶⁵ (남성, 2015년⁶⁶, 교화소)

43. 엄격한 업무 할당량을 맞추지 못한 경우, 다른 형태의 처벌이 내려진다. 가령 작업량이 추가되거나 식량을 적게 주거나 혹은 추운 날 강제로 실외에서 있도록 한다.

“인조 속눈썹이랑 목걸이 금속 걸쇠를 만드는 반에 배정됐다. 처음 며칠은 교육이었고 그 다음에는 일일 할당량이 있었다. 할당량을 맞추지 못하면 맞았다. 밥도 적게 준다.”⁶⁷ (남성, 2011년, 교화소)

44. 국가는 수감자를 적절히 인도적으로 대우하며, 아울러 국제인권법에 따라 교도 작업이 비인도

63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7조 및 제10조 (1)항; 인종차별철폐조약 제5조 (b)항; 아동권리협약 제37조 (a) 및 (c).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10조 (1)항에 따르면, 국가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이 인도적인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이 존중되는 대우를 받도록 보장할 적극적인 의무를 지닌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 일반 논평 20호 문단 2와 벨스만델라규칙 규칙 1 참조. 이러한 의무의 절대적 성격에 있어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4조 (2)항 참조; 고문방지협약 제2조 (2)항과 (3)항, 제16조, 고문방지위원회, 일반논평 2호, 문단 1 및 문단 5.

64 Krnojelac, ICTY T. Ch. II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2002년 3월 15일, 문단 193-5.

65 KOR/21/0027. 본 보고서에서 사용되는 이와 같은 형식의 일련번호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기밀을 유지하여 수행한 면담을 지칭한다.

66 해당 연도는 인용구에 일어났다고 언급되는 사건이 어느 해에 있었던 일인지를 가리킨다. 연도가 언급되지 않은 경우는 해당 면담대상자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보호를 위해 관련 정보를 삭제한 경우이다.

67 KOR/20/0026.

적 환경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가령 보건, 안전, 산업 재해 및 직업병과 관련하여 반드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⁶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탈자는 종종 (건설, 농업, 벌목, 탄광 및 기타 광산 작업 등)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했을 뿐만 아니라⁶⁹ 보건 및 안전 보호 조치도 부재했다고 설명한다.

“시멘트 상하차 하던게 (힘들어서)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다. 가래를 뱉으면 시멘트 덩어리가 툭툭 나온다. 숨을 안 쉴 수는 없어서 계속 시멘트가 들어갔다. 마스크나 장갑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옷가지는 그냥 본인 옷을 입었다 ... 손을 씻어도 시멘트가 (잘 씻겨지지 않아) 지워지지 않고 손이 터서 갈라졌다.”⁷⁰ (여성, 2009년, 노동단체)

45. 수감자는 필수적인 기계 및 장비도 없이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강요 받았다.

“농사를 짓는 1반에 배정됐다. 옥수수, 배추, 무를 키웠다. 기계는 없었다. 원래는 소가 끄는 수레를 일곱, 여덟 명이 끌었다. 몰래 밭에 있는 생 옥수수, 배추, 무를 먹었다.”⁷¹ (여성, 2014년, 교화소)

과거 수감되었던 이들은 또한 수감자가 어떠한 보호 조치도 없이 가혹한 기상 조건 속에서 작업한 결과로 부상이나 질병을 얻었다고도 설명했다.

“마당에 앉아서 하기 때문에 밭에 동상이 왔다. [나도] 나무하러 갔다가 밭에 동상이 [왔다.]”⁷² (남성, 2013년, 집결소)

보건 및 안전 조치 부재는 자격을 갖춘 의료진, 의약품 및 의료 장비를 포함하여 구급 시설 내 보건의료 부재로 인해 더욱 심화된다.⁷³ 이는 그 자체로도 국가의 인권 의무 위반이다.⁷⁴

46. 수감자는 노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영양가 있는 식단과 식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북 이탈자는 중노동을 해야 하는 수감 시설 내에서 자신이 경험하고 목격한 영양실조 및 기아 상황을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설명했다.

“나는 건설반에 있었다. 겨울에는 멀리 가서 화목을 가져와야 했다. 다른 때는 건설용 벽

⁶⁸ 넬슨만델라규칙, 규칙 101(1).

⁶⁹ KOR/16/0020, KOR/16/0034, KOR/17/0023, KOR/17/0047, KOR/17/0076, KOR/17/0078, KOR/20/0005, KOR/20/0006, KOR/20/0007, KOR/20/0013, KOR/20/0016, KOR/20/0035, KOR/21/0001. 또한 북한인권시민연합의 “북한의 피로 물든 석탄 수출: 정권을 유지하는 다단계 수익 구조”(2021년 4월)를 참조.

⁷⁰ KOR/20/0013. 또한 KOR/20/0005, KOR/20/0011, KOR/21/0001, KOR/22/0012 참조.

⁷¹ KOR/20/0018.

⁷² KOR/20/0015. 또한 KOR/16/0020 참조.

⁷³ KOR/18/0027, KOR/18/0029, KOR/18/0050, KOR/18/0078, KOR/18/0081, KOR/19/0005, KOR/19/0010, KOR/19/0011, KOR/19/0015, KOR/19/0032, KOR/19/0036, KOR/19/0042, KOR/19/0043, KOR/19/0044.

⁷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제12조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또한 넬슨만델라규칙, 규칙 24, 25 및 여성수감자 처우와 여성 범죄자 비구금조치에 관한 유엔 규칙(방콕규칙), 규칙 10을 참조한다.

돌을 만들었다. 너무 힘들었다 ... 배가 무척 고팠다. 잡초와 풀을 뜯어서 먹고 아프기도 했다.”⁷⁵ (남성, 2006년, 교화소)

47. 인도적인 근무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구금자에게 요구되는 작업량도 규제되어야 한다. 법이나 행정 규정으로 하루 최대 작업 시간을 정해야 하며,⁷⁶ 일주일에 최소 하루는 휴일로 지정되어야 하고, 수감자 처우 차원에서, 또한 사회 재활을 위해 교육을 받거나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보장되어야 한다.⁷⁷ 북 이탈자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구금 제도상 과도한 작업 시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했다.

“할당량이 많았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자는 대신 일해야 할 때도 있었다.”⁷⁸ (남성, 2011년, 교화소)

48. 수감자에 가해지는 엄격한 통제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된다. 2013년 집결소에 수감됐던 한 여성 구금자는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계호원에게 보고해야 했다. 계호원은 대부분 20대 초반이었다. 계호원한테서 일 미터 정도 떨어져 서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해야 했다. 일 미터보다 가까이 다가가면 맞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⁷⁹ 2013년 집결소에 수감됐던 한 남성 구금자는 20명 내지 30명으로 이뤄진 구금자 무리가 작업장에서 일했고 “계호 두세 명이 자동 보충을 착용한 상태로 감시”했다고 진술했다.⁸⁰ 해당 수감자는 “우리를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면 우리를 한 명씩 줄지어 세워 신발끈 같은 줄로 묶어서 작업장으로 향하게 했다”고 묘사했다. 2011년 집결소에 수감됐던 한 여성 구금자는 “대체적으로 병장 한두 명이 무장한 채로 우리를 데리고 작업장으로 갔고 보안원이 동행했다”고 진술했다.⁸¹

49. 법정에서 수감자의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만 노동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강제노동과 관련하여 중요한 인권 기준이다.⁸² 유죄 선고를 받지 않은 수감자가 하는 작업은 반드시 자발적으로만 이뤄져야 한다.⁸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처벌법에 따라 재판이나 사법부 개입 없이 노동단련형을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 강제노동의 피해자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⁸⁴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면담한 한 이탈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75 KOR/22/0003.

76 벨스만델라규칙, 규칙 102(1).

77 벨스만델라규칙, 규칙 102(2).

78 KOR/20/0026.

79 KOR/16/0020.

80 KOR/20/0015.

81 KOR/20/0008.

82 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협약(제29호), 제2조 (2)(c)항.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8조는 강제노동 금지가 “범죄에 대한 형벌로 중노동을 수반한 구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에서, 권한있는 법원에 의하여 그러한 형의 선고에 따른 중노동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언급하며, 이어서 강제노동은 “작업 또는 의무로서 ...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의하여 억류되어 있는 자 또는 그러한 억류로부터 조건부 석방 중에 있는 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83 벨스만델라규칙, 규칙 116.

8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에 따르면, “로동교양처벌”을 5일 이상 6개월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는 (제18조) 권한을 지닌 공무원은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제333조)와 “인민보안기관”(제337조)을 포함한다.

“재판이 없었다. 로동단련대로 바로 보냈다... *****에 있는 현장에서 공원을 짓는데 배정됐다. 건설과 관련된 모든 일을 했다. 현장을 청소하고, 모래와 자갈을 나르고, 돌을 부셨다.”⁸⁵ (여성, 2019년, 로동단련대)

마찬가지로, 집결소를 포함한 미결구금시설에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도 받지 않은 채 수감되어 노동을 하도록 강요당한 이들도 강제노동 피해자로 볼 수 있다.⁸⁶

50. 사법 절차를 거친 개인이라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변호사 접근권을 포함하여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만연하기 때문에 강제노동 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다.⁸⁷ 더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표현할 자유나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경우 국제인권법상 자의적 구금으로 본다.⁸⁸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면담한 이들 가운데, 로동단련형이나 교화형을 받아 중노동을 하게 된 거의 대부분의 경우, (국내 이동 및 출입국 등의) 이동의 자유, (해외 정보를 수신하는 등의)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인권을 행사하는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 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사례에서는 다른 강제노동 요건도 찾아볼 수 있는데, 구금 상태에서 “정치적 강압이나 교육의 수단, 또는 정치적 견해 또는 기존 정치·사회·경제적 제도에 사상적으로 반대하는 견해를 갖거나 표현한 데 대한 처벌”로, 혹은 “노동 규율의 수단” 및 “인종, 사회, 국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부터 기인한 차별 대우의 수단”으로 노동을 이용했기 때문이다.⁸⁹

51. 국제 표준은 수감자가 민간 사업의 일환으로 혹은 경제 발전을 위하여 비자발적인 작업을 한 경우 강제노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⁹⁰ 이는 강제노동의 착취적 성격을 보여주며,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기록한 피해자 진술과도 일맥상통한다.

“단련대 가서는 아침에 기상하여 5시부터 일했다. 단련대원들 텃밭이 있는데, 풋고추, 오이, 강냉이, 콩 등 단련대 직원들 양식을 키우고, 직원들이 이것을 팔아서 챙겼다.”⁹¹ (여성, 2016년, 로동단련대)

52. 강제노동 자체로도 심각한 인권 침해이지만, 여기에 더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정 제도

⁸⁵ KOR/20/0032.

⁸⁶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2020)는 73쪽부터 83쪽에 걸쳐 로동단련대와 집결소 내 중노동 사례를 언급한다. 이어서 해당 사례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8조 3(b)항에 언급되었듯이 권한있는 법원의 선고에 따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노동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⁸⁷ KOR/17/0123, KOR/18/0027, KOR/18/0031, KOR/18/0032, KOR/18/0050, KOR/18/0058, KOR/18/0060, KOR/18/0074, KOR/18/0077, KOR/18/0078, KOR/19/0001, KOR/19/0002, KOR/19/0004, KOR/19/0011, KOR/19/0015, KOR/19/0030, KOR/19/0042, KOR/19/0044, KOR/19/0049, KOR/20/0006, KOR/20/0007, KOR/20/0010, KOR/20/0016, KOR/20/0018, KOR/20/0024, KOR/20/0026, KOR/21/0027.

⁸⁸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35호, 문단 17.

⁸⁹ 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 폐지 협약(1957년, 제105호), 제1조 (a), (c), (e) 항. 조사위원회는 “정치범 수용소와 마찬가지로, 일반 감옥에서도 수감자들은 강제노동에 동원되어 광산, 공장, 농장 및 벌목장을 운영한다. 이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은 교화소에 재투입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한다. 문단 801.

⁹⁰ 상동, 제3조 (b)항. 또한 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 폐지-고용주와 사업체를 위한 편람.

⁹¹ KOR/21/0003.

하에서 정치 제도나 지도층에 위협이라고 여겨지는 개인을 특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강제노동이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이용된다고 불만을 상당량의 정보를 수집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국가공무원이 국제형사법상 반인도범죄로서의 노예화에 책임이 있다고 불만을 가능성이 있다.

53. 조사위원회는 2014년 보고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정치범 수용소인) 관리소 등에서 반인도범죄로서의 노예화가 자행됐고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불만을 합당한 근거가 존재한다고 결론내렸다.⁹²

“수감자는 종종 영양실조와 질병에 너무 쇠약해져서 말그대로 일하다가 죽기도 한다. 수감자는 이 상황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없다. 강제노동의 불이행은 즉결 처형, 고문과 굶주림을 악화시키는 배급량의 삭감을 포함한 가혹한 처벌로 이어진다. 경비가 삼엄한 완전 통제구역에서 탈출은 거의 불가능하다. 누구든 탈출을 시도하면 즉결 처형된다. 수감자들은 일상적으로 그들에게 고문을 가하고 그들의 성적 권리 및 재생산권을 불용하는 수용소 당국의 완전통제 대상이다.”⁹³

54. 조사위원회는 일반 감옥(교화소)에도 노예화가 존재한다고 결론내렸다.

“구금 시설 종류에 따라 강제노동에 처하는 환경에 차이가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반 감옥 모든 곳에서 국제형사법이 정한 엄격한 기준에 따른 노예화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화소, 특히 광산 감옥의 수감자가 수행해야 하는 강제노동의 유형, 기간 및 강도는 노예화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한다. 조사위원회는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 작업 할당량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혹은 탈옥을 시도한 자에게 부과된 의적 굶주림, 비인도적인 생활 조건과 가혹한 처벌 등 전반적인 맥락을 고려한다.”⁹⁴

55.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가 2015년 개소한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감옥에서 반인도범죄로서의 노예화가 자행됐고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조사위원회 결론을 지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중앙화된 저장소에 보존했다. 일부는 본 보고서에도 포함되었다. 인권최고대표는 2021년 2월 인권이사회에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면담대상자가 설명한 강제노동 환경을 관련 법적 기준에서 분석해봤을 때, 수감자 대상 통제의 정도, 이동의 자유의 전면 부재, 도주 저지·처벌 조치, 비인도적 환경과 신체적 폭력 및 정신적 위협 사용, 수감자 노동으로 국가기관 및/또는 개인이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 등에 주목한다. 만약 조사위원회가 시사한 바와 같이 상기 행위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및/또는 체계적인 공격의 일환으로 발생했다고 권한 있는 법원이 판단할 경우, 이는 반인도범죄로서의 노예화 또는 ‘신체 또는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대하여 중대한 고통이나 심각한 피해를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유사한 성격의

92 조사위원회 보고서, A/HRC/25/63, 문단 1023, 1034, 1048, 1049.

93 조사위원회 보고서, A/HRC/25/63, 문단 1049.

94 상동, 문단 1078.

다른 비인도적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⁹⁵

5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20년 1월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응하여 자체적으로 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더욱 고립되었다. 이에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적절한 식량과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에 있어 구금 시설 내 환경이 더욱 악화됐을 가능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기본 필수재 수입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강제노동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졌을 수 있다.⁹⁶

ii. 국가가 강제로 배정한 직장

57. 국제법상 강제노동을 판별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수락한 일인지 여부이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제6조는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인정한다.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29호에 따르면, 개인이 합당한 기간 내 사전 고지를 하여 징벌, 처벌 혹은 처벌의 위협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고용 상태를 중단할 수 없다면 강제노동이라 볼 수 있다. 고용주를 바꿀 수 없게 금지한 것을 “강제노동의 위험을 키우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로 본다.⁹⁷ 해당 원칙은 또한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 협약(1964년, 제122호)에 명시된 “자유로이 선택된 고용”의 개념에도 설명되어 있다. 국제노동기구 고용서비스 협약(1948년, 제88호)에 따르면 국가는 노동의 공급과 수요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직업간의 이동 및 지역간 이동을 용이하게 할 의무가 있다.
5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국가가 학업이나 군 복무를 마친 개인 모두를 직장에 배정하며, 그에 따라 거주지도 결정된다. 조선로동당은 공장, 광산, 건설 사업소 등을 포함한 모든 직장 배정을 전적으로 독점하여 관리한다.⁹⁸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에 우려를 표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 8조와 상충하는 점을 언급했다.⁹⁹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200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하여금 “모두가 자유롭게 자신의 직업과 직장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했다. 해당 위원회는 “현재 국가가 강제적으로 배정한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는 노동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는데,

⁹⁵ A/HRC/46/52, 문단 66.

⁹⁶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참조(2022년 7월 29일), A/77/247, 문단 30.

⁹⁷ 국제노동기구, Observation(의견) 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협약 및 권고 이행 전문가 위원회)—2018년 채택 및 제108회 국제노동총회(2019년) 발간.

⁹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2013), 355-356쪽.

⁹⁹ 특히 사회주의로동법 제2장 제14조와 18조를 참조한다. 사회주의로동법 제14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근로자들은 공산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의 담당자들이다.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는 것은 국민의 영예이며 가장 신성한 의무이다. 공민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보람찬 로동에 자원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고 언급한다. 제18조는 “사회주의 로동 규율은 자각적 규율이며 사회주의 로동 규율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근로자들의 응당한 의무이다. 근로자들은 사회주의 로동 규율과 로동 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제정된 절차를 밟지 않고 마음대로 직장을 리탈할수 없다”고 언급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2차 정기 보고서 검토(2001년), CCPR/CO/72/PRK, 문단 17. 또한 사회주의로동법 제4조도 관련이 있는데, “사회주의하에서 공민은 로동에 참가할 의무를 지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 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자기 능력에 따라 사회적 로동에 참가한다”고 언급한다. 이어서 제10조는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에 따라 전인민경제적 범위에서 사회적 로동을 계획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직한다”고 말한다.

“이는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직업과 직장을 결정할 권리에 반하기 때문이다.”¹⁰⁰

59. 직업이나 직장을 선택할 자유의 부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가 억압되고 개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하거나 인생 행로를 결정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좀 더 큰 맥락 속에서 나타난다. 이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22조에서 보장하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타인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¹⁰¹ 노동자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직업과 직장을 선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조건 및 처우의 개선을 국가에 단체로 요구할 수 없다. 국민은 친인척 연줄이 있거나 국가공무원에게 뇌물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국가 일자리 중 어디에서 일할지에 대한 선택권은 거의 없다.¹⁰²

*“졸업하면 일부는 군에 가고, 일부는 공장에 배치되고, 또 일부는 돌격대에서 일을 한다.”¹⁰³
(여성)*

60. 취업 시 차별은 사회계급제도인 성분에 따라 발생한다.¹⁰⁴ 성분 제도는 국민 개개인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판단하여, 그 정도에 따라 크게 핵심, 동요, 적대의 세 계급으로 분류한다.¹⁰⁵ 성분 제도는 국가가 정부 통치에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는 이들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소외시키며, 정부 안정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충성심 있는 계층을 좋은 직장과 거주지에 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¹⁰⁶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 관심, 역량에 따라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가족 배경에 따라 직장이 결정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전혀 관심이 없거나 능력이 되지 않는 일에 배정되어 일한다.”¹⁰⁷ (여성)

¹⁰⁰ E/C.12/1/Add.95, 문단 14 및 3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3차 정기 보고서 제출 기한은 2008년 6월 30일이나 아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¹⁰¹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제8조 또한 “모든 사람은 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를 보장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200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이행을 살폈는데 (제31차 회기)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36. 위원회는 독립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와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노동조합과 관련된 권리에 있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제8조에 부합하도록 국내법을 검토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¹⁰² KOR/22/0020.

¹⁰³ KOR/22/0012.

¹⁰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 계급 제도인 성분 제도가 국내에서 실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모든 국민이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갖고 향유한다고 주장하며, 국내법은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을 보장한다고 말한다.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실무그룹 보고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A/HRC/42/10, 문단 70 참조.

¹⁰⁵ 성분 제도는 하위 51개 범주를 두고 있다. 세월의 경과에 따라 실제 범주는 조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적대”로 분류된 이들은 과거 지주의 후손, 1910-1945년 식민지 시절 일본에 부역한 것으로 파악되는 이들, 대한민국에 친척이 있는 이들, 기독교인을 포함한다.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2020) 참조, 257-271쪽. 또한 북한인권위원회의 2021년 보고서 “South Africa’s Apartheid and North Korea’s Songbun: Parallels in Crimes Against Humanity(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정책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분 제도: 반인도범죄의 유사성)”도 참조한다.

¹⁰⁶ 이러한 차별은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2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제2조를 포함한 인권조약에 따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적 의무에도 반한다. 또한 국제관습법으로 널리 통용되는 세계인권선언 제2조에도 반한다.

¹⁰⁷ KOR/20/0009. 다음도 참조한다: “Understanding Modern Slavery in North Korea(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현대판 노예제 이해하기)”, Walk Free Foundation(워크프리재단), 2017, 14-15쪽.

다만 성분이 높아 특혜를 받는 이들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일하고 무엇을 할지 자신이 선택할 수는 없다.

*“선택의 자유가 없다. 김일성 대학교를 졸업하더라도 당이 정한 곳에서 일해야 한다.”¹⁰⁸
(여성)*

61. 국가가 배정한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보수나 배급을 아주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한다.

“농장에서 3년간 일했다.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일했다. 농장에서 밥을 주지 않아서 집에서 먹을 것을 가져가야 했다.”¹⁰⁹ (여성, 2015년)

성분이 높은 이들은 또한 직장에서 더 나은 조건과 처우를 누릴 가능성이 있다.

“노동자에게 배급과 보상을 주는 일자리가 있다. 그런 경우 경제적으로 더 낫다. 이러한 일자리의 경우 가족 배경이나 사회적 지위를 본다.”¹¹⁰ (남성)

62. 사회가 여성이라는 성별에 아내, 어머니, 돌봄제공자로서 역할을 부여함에 따라 기혼 여성은 가족을 돌보도록 국가에서 배정한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허용된다.¹¹¹ 이로 인해 여성이 소규모 민간 상행위에 좀 더 자유롭게 참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많은 가정에서 여성이 가장으로 역할한다. 그에 따라 여성은 가족의 가장, 주부, 그리고 돌봄제공자로서 역할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되고, 결국 젠더에 따른 인권 침해로 이어지는데, 가령 여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가족을 경제적으로 책임질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해외로 인신매매를 당해 강제혼과 매춘을 하게 된다. 북 이탈자는 강제로 국가가 배정하는 직장에서 보상도 없이 일하는 제도로 인해 남성의 행위주체성, 자주성 및 존엄성이 타격을 입는다고 내비쳤는데, 이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남성의 가치가 평가되는 젠더 규범에 따른 것이다.

“19세에 중국 남자한테 인신매매 당했다. 북에서 생활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힘들었다... 아버지 월급이 100원이었는데, 조선로동당에 바치고 나면 30원밖에 남지 않았다. 아버지가 당원이라서 일을 빠질 수는 없었다. 어머니는 편찮으셨다. 그래서 내가 가장 역할을 해야 했다. 장마당에서¹¹² 미나리를 팔았다... 그렇다. 돈을 내야 했다. 돈을 안내면 물건을 가져가버린다. 남새를 팔려면 50원 내지 100원을 내야 했다.”¹¹³ (여성, 2008년)

¹⁰⁸ KOR/20/0038.

¹⁰⁹ KOR/20/0005.

¹¹⁰ KOR/20/0035.

¹¹¹ “북한 여성의 일상 생활”, 김원홍, 통일교육원(2014년 10월), 42쪽; 북한인권백서 2021, 통일연구원(2021년 10월), 420-423쪽. “The Resurgence of a Market Economy in North Korea(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시장 경제의 부활)”, Andrei Lankov,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카네기 국제평화재단) (2016).

¹¹² 장마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지역 시장을 지칭한다.

¹¹³ KOR/21/0021.

63. 사람들은 억지로 일자리를 맡아 직장에 나올 수 밖에 없는데, 행정적 처벌로 노동단련대에 구금되거나¹¹⁴ 감옥에 수감될 위험 때문이다.

“보위지도원이 ... 교화를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일을 하루 이틀 안 나가면 무조건 보안서에 이야기한다고 협박했다. 굶어 죽더라도 국가일을 하라는 말이다. 다름없다.”¹¹⁵ (남성)

국가가 배정한 직장에서 일하도록 강제하는 데 국가 차원에서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가령 다른 권리를 누리는데 필요한 신분증을 발급 받으려면 국가 배정 직장에서 일해야 한다.

“18살이던 해 12월에 나보다 나이가 많은 이웃과 **로 여행을 갔다. 몇 번 갔던 곳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행허가증이 없어서 체포됐다. 나는 신분증이 아직 없어서, 여행 허가를 받을 수가 없었다. 신분증이 있으면 국가가 배정한 직장에 가야하기 때문에 신분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았다.”¹¹⁶ (여성, 2007년)

64.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면담한 이탈자가 진술한 다음 사례를 보면 국가가 배정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생계를 꾸릴 때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알 수 있다.¹¹⁷

“직장에서 배급, 식량, 월급 중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가정에서 남자가 ... 돈을 벌어야 하는데, 직장에 나가지 않으면 노동단련대에 보낸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돈을 버는 대신 할 일이 없어도 직장에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여자가 돈을 벌어야 한다.”¹¹⁸ (여성)

“[아들] 이름이 직장에 등록되어 있다. 직장이 생산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수익반’이 따로 있다. ‘수익반’은 일년에 특정 금액만큼 벌어서 직장에 내야 한다. 그래서 아들이 농장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번 돈을 직장에 냈다. 돈 버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한다. 직장에서는 하루종일 아무것도 안하고 앉아만 있다.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계를 꾸리고 직장에 돈도 바친다. 중앙 당국 명령에 따라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직장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¹¹⁹ (여성)

65. 뇌물을 줄 여력이 있는 사람들만 국가가 배정하는 직장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돈을 버는 일을 할 수 있다.¹²⁰ 다만 여전히 학대와 착취에 취약한 환경에 놓인다.

¹¹⁴ KOR/20/0008, KOR/20/0013, KOR/20/0016, KOR/21/0003. 행정처벌법 제115조는 “무직 건달을 부렸거나 무단결근을 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노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노동교양처벌을 준다”고 명시한다. 기혼 여성은 가정 생활만 하도록 허용되는데, 여전히 인민반을 통한 동원을 통해 일을 하도록 배정받는다. (본 보고서의 “노동 동원” 부분을 참조한다.)

¹¹⁵ KOR/20/0015.

¹¹⁶ KOR/21/0021.

¹¹⁷ 노동자에게 적절하고 공정한 보수를 보장하도록 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제7조에 따른 국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¹¹⁸ KOR/20/0011. 또한 KOR/22/0008.

¹¹⁹ KOR/20/0011. 물자와 전기 부족은 또한 국가가 운영하는 직장이 사실상 기능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 결과 관리자는 수익 활동을 모색하게 된다. 관련 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 KOR/20/0034.

¹²⁰ KOR/20/0008, KOR/20/0026, KOR/20/0034.

“3년 후부터 농장에 나가지 않았다. 자체적으로 일하고 당국에 돈을 내서 동원을 나가지 않았다. 아직 농장에 적을 두고 있다. 남편도 농장에 적을 두고 있긴 하지만 일을 가지는 않는다. 남편은 자체적으로 농사일을 한다.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삼림지에서 일을 한다. 농장에 6개월 일을 나가지 않으려고 600위안을 냈다. 우리 둘 몫을 전부 낼 여력은 없었다. 남편 몫만 전부 냈고, 나는 내지 못했다. 보안원이 농장에서 일을 안하고 뇌물도 주지 않는다고 괴롭혔다. 돈을 안내면 로동단련대에 보내겠다고 겁을 줬다.”¹²¹ (여성)

66. 보상이 없기 때문에, 노동자 가운데 기아와 영양실조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¹²² 또한 국가가 배정한 일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위험할 때도 있다.

“건설회사가 나를 탄광에 보냈다 ... 월급은 받지 못했다 ... 탄광에 있을 때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했다. 조건은 어려웠다. 비닐로 만든 임시 숙소에서 지냈다. 거기 있을 때 가을이었는데 난방도 되지 않았다. 제대로 된 바닥이 아니어서 추웠다. 육체적으로 힘들었고 위험하기도 했다.”¹²³ (남성, 2014년)

노동자에게 어떠한 권한과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 억압적인 근무 환경은 젠더에 따른 문제도 있다. 여성 노동자는 직장 관리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할 위험이 더 크고, 관리자는 이런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아는 언니가 작업반 반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아무데도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했다. 언니가 죽으려고 자살 시도도 했고 힘들어했지만 아무 대응도 못했다. 좀 반반한 여자들은 다 성폭력 당하는 분위기 였다.”¹²⁴ (여성, 2000년대 초)

67. 국가가 배정한 직장은 또한 정치적 강압과 교육의 수단으로도 이용된다. 국가가 국민의 위치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 직장에서 조선로동당 당원과 보안 및 치안 관계자가 매주 사상 주입의 수단으로 자기 비판 및 상호 비판 시간을 조직한다. 이러한 비판 때 심각한 사상적 일탈이 노출될 수 있다는 압박이 언제나 있는데, 노동자가 자의적 구금을 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조선로동당 차원에서 매주 단체로 비판하는 시간인] 생활총화에서 비판을 당한 사람은 그 범죄가 크면 징계를 받는다 ... 생활 제대는 불명예스러운 것이다. 직장 배치를 가장 힘든 곳으로 받기도 한다 ... 생활총화를 해서 조직생활을 강화하는 이유는 자기말 잘 듣게 하려는 것이다.”¹²⁵ (여성)

¹²¹ KOR/20/0005.

¹²² KOR/16/0088.

¹²³ KOR/21/0022.

¹²⁴ KOR/16/0088.

¹²⁵ KOR/21/0002.

iii. 군 징집

68. 국제 기준상, “전적으로 군사적 성격의 작업에 대해서 의무적인 병역법에 따라 강요되는” 작업만이 강제노동에 포함되지 않는다.¹²⁶ 해당 문구는 공공 작업에 징집병을 소집하는 일을 막기 위한 목적이며,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05호 제1조(b)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기에 이르렀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강제 및 강요된 노동은 “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동을 동원하고 이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69. 앞서 강조했다듯, 강제노동이라고 보는 주요 기준은 선택 가능 여부이다. 군 입대를 자유로이 결정했다는 전제 하에, 자발적으로 군 복무를 하는 경우, 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 협약(제29호)의 의무 군 복무 관련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¹²⁷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이러한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전군복무법(2003년)에 따르면 남녀 모두 의무적으로 상당기간 군 복무를 해야 하는데, 남성의 경우 최장 10년까지 징집된다. 19세였던 2010년에 징집됐던 한 남성은 “군 복무를 할지 말지 선택권은 없었다. 평균 10년 복무한다”고 회상했다.¹²⁸ 성분이 낮은 젊은 남성은 10년보다 더 긴 기간 복무할 수도 있으며, 더욱 혹독한 노동을 하게 되기도 한다.¹²⁹
70. 감금의 위협이 가해진다는 점에서 군 복무와 중노동의 강제성을 확인할 수 있다.

“남동생은 군 복무시 훈련 대신 중노동을 수행하는 부서에서 일했다. 남동생이 도망갔는데, 군 상관이 잡아서 교화소에 보냈다. 복에서는 군대에서든, 교화소에서든, 농장에서든 일이 무척 힘들다. 문제는 먹을게 없어서 사람들이 노동하기에는 너무 약하다는 것이다.”¹³⁰ (여성)

71. 의무 군 복무 제도 내에서 비군사적 활동이 수행되더라도,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 29호가 다루는 범위를 벗어나는 특정 상황도 있다. 가령 협약 제 29호 제 2조 (2)(d)항이 허용하듯 민간인과 마찬가지로 국가 비상 상태 시 노동을 제공하도록 징집병을 소집할 수 있다. 공병대 혹은 유사한 부대에서 근무하는 징집병이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도로나 다리 건설 등에 투입될 수 있다.¹³¹
72. 하지만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기록한 진술 내용은 앞서 언급한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데, 진술에서 언급된 작업은 광범위하게 이뤄지며 착취적인 특성을 띠기 때문이다. 징집병은 건설 및 농업 부문에서 필요할 때 주기적으로 무급 노동을 제공해야만 한다.

¹²⁶ 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협약(1930년, 제29호), 제2조 (2)(a)항.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8조는 군사적 성격의 의무 및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국민적 역무는 강제노동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¹²⁷ 국제노동총회, 제101차, 2012: General Survey of the Committee of Experts on the fundamental Conventions concerning rights at work in light of the ILO Declaration on Social Justice for a Fair Globalization(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 정의에 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에 따른 노동권에 대한 핵심 협약에 대한 전문가위원회 의견), 2008; 문단 275.

¹²⁸ KOR/21/0025.

¹²⁹ KOR/21/0024. 또 다른 면담대상자는 군 징집 기간이 14년이라고 진술했다(KOR/16/0068). “군복 입은 수감자: 북한군 인권 실태 보고서”, 북한인권정보센터, 2022, 108-118쪽도 참조한다.

¹³⁰ KOR/22/0016.

¹³¹ General Survey of the Committee of Experts(전문가위원회 의견), 문단 275.

“군 복무 중 전투원이 아니라 노동자로 도시에 오는 군인들이 있다. 우리가 군인들을 실제 보기도 하고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지도 볼 수 있다.”¹³² (남성)

다른 징집병의 경우, 군 복무, 노동 그리고 사상 훈련이 뒤섞인 상황에 놓인다.

“8시간 동안 순찰을 하고 나면, 4-5시간 정도 추가로 일을 한다. 농사일에 동원되거나 나무를 하러 간다. 자유 시간에는 김정은 지도 내용이나 조선로동당 10대 원칙과 같은 것들을 공부해야 한다. 구금된 느낌이었다...”¹³³ (남성, 2011년)

이동의 자유를 비롯한 징집병 대상 국가의 통제는 우려스러운 수준인데, 일부 사례에서 징집병이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정도로 봤을 때 국제인권법상 노예제에 해당할 수 있다.

- 73.** 징집병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고, 이들에게 요구되는 작업이 착취적 성격을 띠는 것에 더하여, 징집병에게 요구되는 작업은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 조건과 관련된 다른 인권 의무의 위반일 수 있다. 가령 혹독한 작업 특성, 보건 및 안전 조치 부재, 적절한 식량과 물 미제공, 적절한 의료 미제공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과거 징집됐던 이는 작업이 힘들고 위험하며, 적절한 보건 및 안전 조치도 없다고 진술했다.

“오빠는 제대를 앞두고 서른 살 때 군대 나가서 공사하다가 갱이 무너져서 전사했다.”¹³⁴ (여성)

- 74.** 국가가 강제하는 업무 할당량이 상당히 때문에 노동자의 보건 및 안전이 더욱 위협받는데,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 징집되었던 이는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다섯개 조가 터널 공사를 했다. 조별로 터널의 일부 구간을 뚫게 배정됐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작업해야 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한 조가 바로 옆에 있는 조를 고려하지 않고 폭파시켜서 사고가 나기도 했다. 폭파 일정이 정해져 있긴 했지만, 급하게 진행해야 해서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폭파를 진행했다.”

이러한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피해자 가족은 국가로부터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 징집되었던 이는 또한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그런 사고에서 죽은 사람은 가까운 산에 묻힌다. 가족은 남편이나 아들이 군 복무 중에 사망했다는 통지를 받는데, 금전적인 보상은 없다.”

과거 간호사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군 복무를 하면서 군인을 치료했던 이는 식량과 의료

¹³² KOR/21/0024.

¹³³ KOR/21/0025.

¹³⁴ KOR/17/0128.

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징집병이 얼마나 가혹한 환경에 노출되는지 들려줬다.

“외과 간호원으로 근무했다. 상처 수술하고 치료, 처치를 했다. 군부대가 신설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많이 다쳤다. 군인들이 허약으로도 많이 오고, 건설하다 많이 다쳐서 왔다. 허약 오는 군인은 대개 결핵이 오는데, 육체적으로 약하고 힘들어서 그렇다. 타박상이 왔다가 늑막염이 되었다가 결핵으로 진행된다. 결핵 병동이 따로 있어 그곳에서 집단으로 치료했는데, 영양실조 환자를 따로 치료한게 아니라 결핵까지 진행된 사람을 치료한 것이다.”¹³⁵ (여성)

10년간 징집됐던 경험을 묘사하며 “구금된 것 같았”고 “하나같이 배가 고팠다. 영양실조를 겪는 사람들이 많았다. 모두 굶주리고 배고프고 허약했다”고 진술한 경우도 있다.¹³⁶ 과거 징집됐던 남성이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아래와 같이 진술한 것처럼 휴식이나 여가를 위한 시간도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매일 일하다가 일요일은 쉴 때도 있었다. 일요일이라고 다 쉬지는 않았다. 쉬는 일요일에는 모자란 잠도 더 자고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밖에서 운동도 했다 ... 부대에서 나갈 수 없었다 ... ”¹³⁷ (남성, 2011년)

- 75.** 징집병이 강제노동을 하는 동안 보상이 아주 조금 혹은 전혀 없는 것을 보더라도 징집병이 착취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군 복무는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은 아니어도 10년 동안 무보수로동을 한다. 하전사인 병사 월급이 50원 ... 사관장 생활비는 240원이다.”¹³⁸ (여성)

iv. 돌격대

- 7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가 차원으로 조직한 또 다른 강제노동 동원 제도는 “돌격대” 배치 가 있다. 돌격대라는 용어는 고무적으로 생산적이며 열정적인 노동이라는 표현으로부터 나왔다. 돌격대는 여단, 대대, 중대 등 군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기도 하며,¹³⁹ 국가에서 추진하는 특정 사업을 완수하도록 임시로 결성된 노동자 집단의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¹⁴⁰ 작업은 주로 고된 육체 노동으로 건설 및 농업 부문에 파견되는 사례가 빈번하다.¹⁴¹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참여해

¹³⁵ KOR/21/0002, 또한 KOR/21/0023, KOR/21/0031.

¹³⁶ KOR/21/0025.

¹³⁷ 상동.

¹³⁸ KOR/21/0003, 또한 KOR/21/0024.

¹³⁹ KOR/20/0035.

¹⁴⁰ “Why North Korea introduced its own version of alternative civilian service(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했는가?)”, Andrei Lankov, NK News, 2022년 3월 25일.

¹⁴¹ KOR/20/0003, KOR/20/0021, KOR/20/0034, KOR/20/0035, KOR/21/0014, KOR/22/0020.

야 하는 국가 조직인 청년동맹¹⁴² 및 여성동맹¹⁴³ 등이 돌격대 구성원 선발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가 운영하는 직장은 직장별로 특정 인원만큼 노동자를 선발하여 보내도록 요구받는다.¹⁴⁴ 선발 및 차출된 노동자 월급은 기존 직장에서 지급한다.¹⁴⁵ 노동성 담당자가 청년동맹과 함께 직접 집으로 찾아가 돌격대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파악된다.¹⁴⁶

77.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만이 돌격대에 동원되지 않을 수 있다.

“2017년 돌격대에서 두 달 정도 일했다. 집 짓는 일을 했다. 직장에 돈을 내고 빠지지 못해서, 두 달 동안 월급도 없이 돌격대에서 일해야 했다. 내가 돌격대로 나가있는 동안 아 내가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렸다... 돌격대원은 가난한 집 출신이다. 돈을 내고 동원에서 빠질 수 없기 때문이다.”¹⁴⁷ (남성)

돌격대에 차출될 경우, 남아있는 가족에게 어떠한 재정적인 압박이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78.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이 특히 돌격대 동원에 취약하며, 때로는 장기간에 걸쳐 동원된다. 한 이탈자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말하길, 8살 때쯤 부모님이 사망한 후 집없이 혼자 꽃제비(부랑아)로 살았는데, 19살이 된 2015년 사회안전성에 체포됐고, 이후 돌격대로 보내졌다고 한다.

“산에 가서 기차 선로에 놓일 나무를 했다... 다른 꽃제비도 있었고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다... 내가 도망가지 않았다면 계속 돌격대에 잡아 두었을 것이다. 몇 년 동안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봤다.”¹⁴⁸

체포와 구금의 위협을 가하는 상황은 국가가 강압적으로 돌격대원을 모집했음을 방증한다.

“도망가면 군당에 보고가 되고, 군당은 안전부에 이야기를 해서, 안전부가 체포를 한다. 그리고 단기로 단련대에 간다.”¹⁴⁹ (남성)

79. 과거 돌격대원으로 차출되어 일했던 이들은 돌격대원으로 일할 때 의료 및 안전 조치가 없었다

¹⁴² KOR/16/0014.

¹⁴³ KOR/20/0021.

¹⁴⁴ KOR/22/0004.

¹⁴⁵ KOR/20/0002.

¹⁴⁶ KOR/22/0019.

¹⁴⁷ KOR/20/0034.

¹⁴⁸ KOR/20/0028.

¹⁴⁹ KOR/20/0034.

고 언급했다. 작업 종류에 따라 필요한 기계나 장비도 없이 일했다고 진술한다.¹⁵⁰ 작업 중 부상을 당하는 이들에게도 거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돌격대에서 일하던 중 건물이 무너져서 다리 부상을 입었다. 국가 사업을 하다가 다쳤는데도, 일에서 빠지려면 돈을 내라고 했다.”¹⁵¹ (여성)

과거 돌격대원으로 일했던 이들은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을 했고,¹⁵² 휴식이나 여가 시간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하루에 두 세시간 밖에 못 잤다... 쉬는 날은 없었다.”¹⁵³ (남성, 2016년)

- 80.** 돌격대에 배치된 동안 비록 충분치 않더라도 식량이나 거처가 제공됐다고 진술하는 이들이 대다수였으나, 일부는 전혀 제공되는 것이 없었고 보수도 받지 않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진술했다.

“한 달에 3000원 생활비를 지급했는데, 담배 두 갑 정도 살 수 있는 액수여서 별 도움이 안되었다.”¹⁵⁴ (여성, 2006년)

강제로 돌격대로 배치된 이들은 식량이 심각하게 부족했고, 결과적으로 영양실조가 만연했다고 설명한다.

“여자들 30프로는 영양실조 상태였는데도 일을 했다.”¹⁵⁵ (여성, 2006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된 경우, 가족이나 친구 혹은 이웃과 같은 사회적 관계의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되어, 영양실조에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다.¹⁵⁶

- 81.** 면담대상자가 진술하길, 돌격대원은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수 개월 혹은 수 년간 작업장에서 생활해야 했다.¹⁵⁷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설명한 바에 따르면, 거주 및 업무 환경은 합당한 수준의

¹⁵⁰ KOR/16/0088, KOR/20/0034.

¹⁵¹ KOR/20/0029. 보건의료 부재 관련, KOR/22/0004.

¹⁵² KOR/16/0088.

¹⁵³ KOR/20/0035. 또한 KOR/22/0004.

¹⁵⁴ KOR/16/0088.

¹⁵⁵ 상동.

¹⁵⁶ KOR/20/0034.

¹⁵⁷ KOR/22/0004.

거주 기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¹⁵⁸

“건설장 상황은 나빴다. 화장실도 없고 식사도 충분하지 않고 거처도 온전치 않았다. 비가 새고 겨울에는 나무를 뺄 수도 없었다.”¹⁵⁹ (여성, 2008년)

82. 이러한 현장에서 여성은 특히 성폭력 위협에 취약하다.

“여자 소대의 소대장과 부대장을 제외하고 모든 간부는 다 남자였는데, 모두 여자들을 괴롭혔다. 성폭행 당한 여자들이 많았다.”¹⁶⁰ (여성, 2006년)

성폭력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도 없었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절차도 없다.

“정치부장한테 성폭행 당한 여자는 문제 제기를 했다가 아무 도움도 못 받아서 결국 몰래 도망갔다. 돌격대 정치지도원(정치부장)은 인민위원회 소속인데, 당시 정치지도원은 여자들을 끼고 놀[았다.]”¹⁶¹ (여성, 2006년)

83. 면담 대상자 대다수는 강압적으로 돌격대에 차출됐다고 진술했으나, 면담대상자에 따르면 일부는 조선로동당 당원이 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돌격대원이 되기도 한다.

“돌격대의 여자들 중에 일부는 나처럼 입당하려고 자원한 사람들이고, 대부분인 70프로는 강제로 보내져서 온 사람들이었다.”¹⁶² (여성, 2006년)

다만 “자발적으로” 돌격대원이 된 경우에도 자유롭게 결정 내릴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시되는데, 특히나 강압적인 상황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원하여 돌격대가 되었더라도 국가는 여전히 돌격대원으로 일하는 이들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가령 공정한 업무 조건, 식량 및 보건의료 접근성 보장 및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리도록 하는 의무이다.

84. 돌격대는 또한 정치적 강압과 교육이 이뤄지는 장소이기도 하다. 2017년 돌격대에 동원되어 건

¹⁵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제7조는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는데, 이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조건”, “휴식, 여가 및 노동 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급 휴일”을 포함한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노동기구는 2021년 전세계 상황을 살핀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직업 관련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WHO/ILO Joint Estimates of the Work-related Burden of Disease and Injury (직업 관련 질병 및 부상 부담에 대한 세계보건기구/국제노동기구 공동 추정치), 2000-2016”, 2021년 9월 17일). 해당 보고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노동자 안전에 있어 상당한 퇴보가 있었다고 추산하는데, 2000년 노동자 10만 명당 56.2건의 사망이 발생했고, 2016년은 10만 명당 79.5건의 사망의 발생했다. 해당 수치는 보고서에 포함된 182개 국가 수치 중 가장 높다(60쪽). (주당 55시간 이상의) 과도한 근무 시간으로 인한 뇌졸중으로 사망한 건수를 보더라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장 높은 사망 건수를 기록했고, 더욱 퇴보하는 상태로 보고서는 파악했다. 2000년 노동자 10만 명당 뇌졸중 사망 건수는 17.5건이었고, 2010년은 27.5건, 2016년은 28.1건을 기록했다(67쪽).

¹⁵⁹ KOR/21/0014.

¹⁶⁰ KOR/16/0088.

¹⁶¹ 상동.

¹⁶² 상동. 당 가입 관련 KOR/20/0003, KOR/20/0013. 강제 모집 관련 KOR/20/0021, KOR/21/0030.

설 작업에 투입됐던 남성은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토요일마다 사상 교육이 있었다. 노동자들이 지난 한 주간 작업한 것을 반성하는 시간이다. 또한 지난 한 주간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말을 했는지도 반성하는 시간이다. 도망가고 싶었다고 말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사상적인 문제로 여겼다. 또한 김정은 명령이 있는 경우, 정치지도원이 해당 명령을 전한다. 아침마다 사상적 목적으로 신문을 읽어야 한다.”¹⁶³ (남성)

v. 작업 동원

85. 강제 또는 강요된 노동은 “완전한 자치국 국민의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작업 또는 의무”를 포함하지 않으나,¹⁶⁴ 국제 표준은 “시민적 의무”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을 요구한다.¹⁶⁵ 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협약의 문구와 정신에 반하는 형태의 강제적 의무를 정당화하기 위해 시민적 의무를 이유로 들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통상의 중요도를 갖는 공공 작업이 강제되는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수행하는 일은 “통상적인 시민의 의무”로 볼 수 없는데, 이러한 작업이 “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동을 동원하고 이용하는 수단”에 해당하는 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 105호에서도 금지하고 있다.
86. 여성동맹 및 청년동맹과 같은 단체는 자체적으로 돌격대에 보낼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여기에 더해 인민반과 공조하여 지역 내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좀 더 비정기적인 무급¹⁶⁶ 공공 작업에 인력을 투입시킨다.¹⁶⁷

“북에서는 모든 사람이 조직, 단체 또는 기관에 소속되어야 한다. 재배치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내가 속한 단체에서 연락이 온다. 나는 여맹에서 연락이 왔다... 농사철에는 농사일을 도와야 한다. 모내기부터 김매기와 추수까지 쌀 재배의 모든 단계에 걸쳐 농사일을 돕는다. 퇴비도 내야 한다. 겨울에 각자의 집 화장실에서 퇴비를 가져온다. 우리가 모은 퇴비를 바쳐야 하는 농장도 정해져 있다.”¹⁶⁸ (여성, 2001)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면담한 한 이탈자는 2014년 인민반 동원 경험을 이야기 했다. 당시 김일성 동상과 김정일 동상을 짓는데 동원되어 6개월간 일했다.

“모래를 나르고 돌을 부수는 일을 했다. 매일 동원됐다. 전체 도내 주민이 이런 식으로 동

¹⁶³ KOR/20/0034.

¹⁶⁴ 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협약(제29조), 제 2조(b)항.

¹⁶⁵ 국제노동총회 제101차 회기, 2012: General Survey of the Committee of Experts on the fundamental Conventions concerning rights at work in light of the ILO Declaration on Social Justice for a Fair Globalization(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 정의에 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에 따른 노동권에 대한 핵심 협약에 대한 전문가위원회 의견); 문단 277.

¹⁶⁶ KOR/20/0011.

¹⁶⁷ KOR/18/0017, KOR/20/0019, KOR/20/0011, KOR/20/0032, KOR/20/0026.

¹⁶⁸ KOR/16/0017.

원됐다. 보상을 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는데, 주인이 애국자로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게 당연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¹⁶⁹ (여성)

- 87.** 북 이탈자는 여성이 성별 고정관념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다른 돌봄과 가사 노동에 더해, 동원되어 일도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매일 일하러 가야 했다. 오후 4시까지 일했고 점심 도시락을 싸가야 했다. 4시 이후에는 집안일을 했다. 아직 유치원에 가기에 너무 어린 아이들을 보내는 돌봄 시설이 있다. 아이를 돌봄 시설에 보내려면 한 달에 3000원을 내야 했다.”¹⁷⁰ (여성)

공무원에게 뇌물을 줄 여력이 있는 경우에만 동원에서 빠질 수 있다.

“건설장 가기 싫으면 돈을 내고 일하지 말라고 한다. 안 나가는 대신 돈을 내라는걸 5000원 정도 내게 된다...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돈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 되지 않고 대다수 동원되어서 나간다.”¹⁷¹ (여성)

- 88.** 사회안전성이 체포 및 구금을 위협하는 상황은 이러한 동원이 강압적으로 이뤄진다는 방증이다.

“특별한 사유없이 인민반 작업에 나가지 않으면 분주소에서 2-3일 정도 구금될 수 있다. ... 인민반장이 우리집을 담당하는 분주소 보안원에게 이야기 하면, 보안원이 이야기하러 온다. 작업을 세 번 빠지면 로동단련대에 간다고 협박한다.”¹⁷² (여성)

- 89.** 아동도 학교와 청년동맹 같은 단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강제노동 동원에 취약하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7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아동이 교육, 신체 및 정신 발달 및 안녕을 저해하는 여러 작업에 동원된다는 정보에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 다음과 같은 작업을 포함한다.

- a. 일과 중 상당 시간을 (“경제 과제”라는 명목 하에) 자원하여 농장이나 광산에서 일하거나 숲에서 나무를 하거나 이웃 및 마을에서 김매기를 하거나 도로를 보수하거나 동상을 청소하거나 산림화 사업에 참여하거나 건설 작업에 참여하도록 요구 받는다. 이는 아동의 교육, 건강, 휴식 및 여가에 대한 권리를 저해하며, 이러한 작업에서 빠지려면 대신 돈을 내야 하는 관행이 있다.
- b. 아동은 대규모로 농업에 동원되기도 하는데, 하루 작업 시간이 상당히 길며 때로는 한 달 가량 동원되기도 하며, 해당 기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낸다.
- c. (군과 유사한 청년 건설 여단인) 돌격대에 16세 및 17세 아동을 수용하여 10년간 일하게도 한다. 돌격대의 경우 노동 시간이 길고 신체 노동 강도가 강하며 아동의 교육

¹⁶⁹ KOR/18/0019.

¹⁷⁰ KOR/16/0019.

¹⁷¹ KOR/20/0011.

¹⁷² KOR/16/0019.

접근성이 제한된다.¹⁷³

90.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22년 연설은 아동이 주택 건설을 포함한 대규모 농업 및 건설 현장에 일상적으로 투입되는 것을 드러낸다.¹⁷⁴ 국영 언론도 주기적으로 건설, 광산 및 농업 부문에서 “성과”를 내는 청년돌격대의 “투지”를 극찬한다.¹⁷⁵
91. 아동 노동은 강제노동으로 볼 수 있는데, 아동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판단에 따라 동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며, 또한 이러한 노동으로 초래되는 어려움 때문이기도 한다. 단순히 작업이 고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교육 및 건강, 그리고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¹⁷⁶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¹⁷⁷

“학교에서 강제노동이 심각하다. 2학년부터 동맹에 가입하는데, 9살, 10살밖에 안된 아이들도 국가를 위해 강제로 동원된다. 강독을 청소하거나 나무를 심는 등의 일을 한다. 어릴 때부터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하는 것이다.”¹⁷⁸ (남성)

vi. 해외노동자

9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십 년 간 해외노동자 제도를 운영해왔고, 이들 노동자는 정부에 귀중한 외화 수익을 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노동자는 자신이 자원해서 신청하거나 해외 파견 의사를 직장에 표하는 방식으로 (이후 국가 당국의 선별을 거쳐) 해외에 파견될 수 있다. 또는 직장 차원에서 국가 당국과 협의 후 강제로 파견할 수도 있다.¹⁷⁹ 북 이탈자는 정부가 엄격한 통제를 한다고 설명하는데, 특히 국가보위성은 해외노동자 파견을 조율하고, 파견 후 해외에서 이들을 감시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원칙적으로 국민이 자유로이 해외로 여행을 가거나 자체적으로 해외에서 소득을 올릴 수 없도록 한다.

9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파견한 해외노동자를 수용한 국가 대부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

¹⁷³ CRC/C/PRK/CO/5, 문단 54.

¹⁷⁴ “이번에 만경대혁명학원 학생들을 대평지구 살림집건설에 동원시킨 목적도 원아들이 현실속에 들어가 당정책의 정당성을 절감하고 애국의 정신도 자래우며 강한 의지와 곤난극복정신을 키우고 일하는 방법도 배우면서 조국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기동감들로 자라나도록 하자는데 있습니다. 혁명학원들에서는 열병식과 군사훈련, 사회주의대건설, 농촌지원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학생들에게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주저를 모르고 오직 앞으로만 돌진해나가는 강한 의지와 정신력을 키워주기 위한 사업을 의도적으로 조직하고 꾸준히 실천해나가야 합니다.”, 김정은 총비서 혁명학원 창립 75돐 기념 연설, 2022년 10월 14일, 출처: 조선중앙통신.

¹⁷⁵ 조선중앙통신 기사 참조: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장에서 청년돌격대원들의 투쟁 기세 증폭”, 2023년 4월 10일.

¹⁷⁶ 아동권리협약, 제27조.

¹⁷⁷ 아동권리협약, 제32조.

¹⁷⁸ KOR/17/0082.

¹⁷⁹ “폴란드, 몽골 내 북한 해외노동자의 인권 실태: 북한 밖의 북한”, 북한인권정보센터, 2016년 12월, 34쪽.

화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으며, 정치·역사·경제적 관계가 깊다. 일부 국가는 노동 관련 기준이 느슨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노동 기준이 좀 더 엄격한 국가의 경우, 민간 기업 및 채용 대행업체가 자국 국내법을 위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신 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파악된다.¹⁸⁰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에 따라 설립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상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조치 이행을 살폈던) 전문가패널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신 노동자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에서 정보기술, 건설, 전자, 농업, 의약, 벌목 및 서비스 산업에 종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신 노동자를 수용한 국가가 한때는 최소 45개국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진다.¹⁸¹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면담한 복수의 남성은 주로 건설 및 농업 부문에 배정되거나 의료전문가로 종사했다고 진술했고, 여성은 일반적으로 서비스 부문에 종사했다.¹⁸²

9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12월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며 우려를 표했는데, 앞선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자가 여전히 해외에서 일을 하며 외화를 벌어들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금지된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운용에 이러한 외화 수익을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결의는 유엔 회원국으로 하여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자와 정부에서 안전 감독 관리자로 파견한 이들 전원을 본국으로 즉각, 혹은 결의 채택일 기준 이후 24개월 이내에 송환하도록 했다. 적용 가능한 국내 또는 국제법에 의해 송환이 불가능한 경우만 예외로 두었다.¹⁸³ 전문가패널은 2023년 9월 중간보고서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이 차단되어 회원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신 노동자를 송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정보기술, 요식업, 건설 및 의료 부문에 여전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자가 종사하는 경우가 있었다.¹⁸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2020년 초부터 시행된 국경 차단 조치로 인해 상당수 노동자가 중국과 러시아 일부 지역에 남아있었다.¹⁸⁵ 일부 국가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자가 취업 비자를 학생 비자로 바꿔 제재 조치 적용을 받지 않고 일을 하고 있었다.¹⁸⁶ 일부 국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2019년 12월까지 송환되어야 하는 해당국 국적의 해외노동자 비자를 인도적 사유로 연장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이는 2020년 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이 차단됐기 때문이다.¹⁸⁷

¹⁸⁰ 상동, 22-24쪽.

¹⁸¹ 신창훈, 고명현, Beyond the UN COI Report on Human Rights in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유엔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넘어서) (아산정책연구원, 서울, 2014), <http://en.asaninst.org/contents/asan-report-beyond-the-coi-dprk-human-rights-report/>.

¹⁸² 남성 해외노동자의 경우 벌목업, 광업, 농업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부문에서는 숙련 노동자로, 여성 해외노동자의 경우 직물 공장, 식품 생산 공장 및 기타 서비스 부문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을 참조한다. “러시아 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노동자: 노동 조건 및 인권”, 북한인권정보센터, 2016; “폴란드, 몽골 내 북한 해외노동자의 인권 실태: 북한 밖의 북한”, 북한인권정보센터, 2016년 12월; “Dispatched: Mapping Overseas Forced Labor in North Korea’s Proliferation Finance System (해외 노동력은 어떻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확산 금융에 활용되는지에 대한 추적)”, C4ADS(미국 선진국방연구센터), 2018.

¹⁸³ S/RES/2397 (2017).

¹⁸⁴ S/2023/656.

¹⁸⁵ S/2022/132.

¹⁸⁶ S/2023/656.

¹⁸⁷ S/2022/668.

95. 일부 연구 결과와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기록한 진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노동자 제도의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성격을 드러내는데, 이는 강제노동에 해당할 수도 있다.¹⁸⁸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가 제시하는 강제노동 지표가¹⁸⁹ 관찰된다. (가령 적절한 보상이 없는 강압적인 장시간 근무, 임금 미지급 및 과도한 공제, 관리자의 엄격한 감시와 이동 및 정보 자유 제한에 따른 노동자 고립, 노동자 대상 위협 및 협박, 여권 및 기타 법적 서류 압수, 적절한 식량 및 의료가 보장되지 않은 부적절한 거주 환경, 폭력적인 환경에서 일하게 되어도 고용주 변경이 불가능한 노동자의 상황 등이 있다.)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파견한 해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 관행의 가능성이 있다.
96. 적절한 보상이 없는 장시간 근무는 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 지표 중 하나이다. 인권최고대표 사무소가 면담한 복수의 해외노동자는 신체적으로 고된 작업을 장시간 수행해야 했다고 진술했다. 아침 일찍부터 늦은 밤까지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까지 거의 휴식이나 휴일도 없이 일했다고 전한다.¹⁹⁰ 일주일에 하루 휴일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고, 일부는 한 달에 이틀 휴무일이라고 진술했다. 휴일 유무도 관리자 재량에 달렸다.¹⁹¹ 부과된 업무량을 완수하지 못할 경우 더 장시간 근무해야 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월급이 차감되거나 월급을 전액 받지 못했다.¹⁹² 적절한 보상 없이 장시간 근무하고 녹록지 않은 근무 환경에 노출되는 상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신 해외 근로자가 파견되는 대부분 국가에서 국내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

“주거 지역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 도장을 하거나 타일 작업을 했다.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모든 종류의 일을 했다. 겨울에는 10시간에서 12시간 일했는데, 낮 시간이 짧기 때문이다. 여름에는 하루에 17시간에서 18시간 일했다. 밤 12시가 되어서야 숙소로 돌아와서 하루에 다섯 시간 정도 잤다. 점심이랑 간식을 먹을 때 쉬었다. 한달에 휴일은 하루 있었다.”¹⁹³ (남성, 2014년)

97. 월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유보하는 것도 또다른 강제노동 지표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신 해외노동자는 취업국에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라 본국 국가기관과 연계된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다. 해외노동자가 일하는 회사의 고용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회사에서 운영하는 계좌에 노동자 월급을 예치한다.¹⁹⁴ 취업한 회사가 지급하는 월급의 일부만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해외노동자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월급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데, 국가 기여금 및 근무지에서의 생활비 명목이다. 과거 해외노동자로 근무했던 이들에 따

¹⁸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2022). 또한 R. Breuker 및 I. van Gardingen (eds), “People for Profit North Korean Forced Labour on a Global Scale(이익을 위한 사람들—세계적 차원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강제노동)”, Leiden Asia Centre, 2018 참조. T. Gypchanova, “Labor and Human Rights Conditions of North Korean Workers Dispatched Overseas: A Look at the DPRK’s Exploitative Practices in Russia, Poland, and Mongolia(해외로 파견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자의 노동과 인권 상황: 러시아, 폴란드, 몽골에서의 착취적 관행)”, Cornell Int’l Law Journal, 51, 183 (2018).

¹⁸⁹ 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 지표, 2012.

¹⁹⁰ KOR/16/0068. 또한 KOR/21/0057.

¹⁹¹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2022), 682쪽.

¹⁹²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총회 보고서, A/70/362.

¹⁹³ KOR/16/0068.

¹⁹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총회 보고서, A/70/362.

르면, 월급의 80-90퍼센트는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 월급으로 생활 필수품을 구매한 후, 남은 돈은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낸다.¹⁹⁵ 일부 노동자는 소액의 월급마저도 관리자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졌다고 보고했다. 일부는 월급액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고,¹⁹⁶ 숙소나 근무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계자에게 추가적으로 착취를 당하기도 쉽다고 설명했다.¹⁹⁷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면담한 과거 건설 부문 해외노동자는 현장에서 부상을 당했는데도 회사를 통해서 국가에 기여금을 내야 했다고 진술했다.¹⁹⁸

“벌이의 60퍼센트는 정부로 간다. 20퍼센트는 식비 등 생활비에 쓰고, 나머지는 우리가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도 주면 주는 것이고, 안 주면 안 주는 것이다. 20퍼센트를 모두 주지 않고, 딱 담배랑 생필품을 살 정도만 준다. 매달 주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씩 주고, 20퍼센트에 해당하는 돈을 다 주는 경우는 절대 없다.”¹⁹⁹ (남성)

98. 해외노동자로 일했던 이들은 적은 월급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버는 것보다 나왔다고 언급했다. 해외에서 3년 내지 5년 정도 근무하면, 좀 더 자유롭게 근무지에서 나올 수 있어서 인근 지역에서 자유 계약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데, 주로 건설 부문이라고 전한다. 이런 경우에도 국가에 일정 금액 기여해야 하지만, 노동자가 추가적으로 수입을 챙길 여지가 좀 더 있다.²⁰⁰

“일을 마치고 나서는 다른 곳에서 개인적으로 일을 더 해서 생계를 꾸린다.”²⁰¹ (남성)

99. 또 다른 강제노동 지표로 해외노동자의 고립된 상태를 들 수 있는데, 외부 정보 접근이 거의 허용되지 않고 이동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보안담당자를 해외로 파견해서 해외노동자를 감시하도록 한다.²⁰² 보안담당자는 노동자를 상시 감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규칙과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과거 해외노동자는 통제 제도가 엄격했다고 진술했다. 이동의 자유가 없고, 회사가 여권을 압수한 상태로 근무지에서 나올 수 없고 좁은 거주 시설에 모여서 생활하며, 국가보위성 관계자가 거주 시설을 지키는 경우가 빈번하다.²⁰³ 노동자는 동료와 대화할 때도 항상 조심할 수 밖에 없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 정부 첩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²⁰⁴

“러시아에서 일하는 노동자 500명당 보위원이 한 명씩 있다. 작업반으로 나뉘지는데, 보

¹⁹⁵ KOR/16/0071. 또한 KOR/22/0010.

¹⁹⁶ KOR/21/0022, KOR/22/0008.

¹⁹⁷ KOR/22/0018.

¹⁹⁸ KOR/22/0011.

¹⁹⁹ KOR/21/0057.

²⁰⁰ KOR/21/0026.

²⁰¹ KOR/21/0057. 또한 KOR/21/0058.

²⁰²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2022).

²⁰³ KOR/16/0068. 또한 KOR/20/0042 및 KOR/22/0021.

²⁰⁴ KOR/22/0011.

위원이 작업반장에서 작업반 소속 인원을 감시하라고 한다. 작업반장이 매일 보위원에게 보고한다.”²⁰⁵ (남성)

- 10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은 통신과 정보 접근을 항상 엄격하게 통제한다. 과거 해외노동자는 본국에 있는 가족과 연락할 수 있는 전화기 사용도 제한적이었다고 언급했는데, 본국에 보내는 서신은 보위원이 사전에 읽고 검열했다.²⁰⁶ 숙소에서 신문, 인터넷, 텔레비전을 보는 것에도 제한이 있어 정보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다.²⁰⁷ 해외노동자는 또한 심리적 압박과 고립을 경험하는데,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서 지내기 때문이다.²⁰⁸

“근무지를 나올 수 없다. 처음에 도착했을 때 텔레비전도 없고 영화도 볼 수 없었다. “자본주의”이기 때문이다. 나중에 작업반장이 사무실에 텔레비전을 사서 몰래 볼 수 있었다. 영화는 못 봤다. 신문은 없다... 한달에 한번 편지는 보낼 수 있지만 보위원이 읽고 검열한다. 우리가 부적절한 것을 적을 경우 보위원이 찢어버렸다. 북에서 우리에게 써 보낸 편지도 마찬가지다.”²⁰⁹ (남성)

- 101.** 적절한 의료 및 안전 조치 없이 기준 이하의 근로 및 거주 환경에 노출되는 것 또한 강제노동 지표이다. 과거 해외노동자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위험한 환경 속에서 작업해야 했고, 기준 이하의 거주 환경에 놓였다. 많은 노동자가 작업 현장에 있는 과밀화된 컨테이너에서 생활했다. 이들 장소 대부분은 수백 명이 함께 공용 욕실을 사용하는 등 위생 환경이 열악하고, 세탁 및 청소 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회사가 노동자 월급에서 식비를 공제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는 질이 떨어지는 충분하지 않은 양의 식사를 제공받는다.²¹⁰

“북 노동자는 임시 컨테이너에서 생활한다. 제대로 된 숙소도 없다.”²¹¹ (남성, 2020년)

- 102.** 근무지에서 의료 및 안전 조치가 적절히 취해지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다. 정보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지역 당국에 보고되지 않고, 대신 보안담당자가 처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²¹² 가혹한 근로 조건으로 인해 노동자는 필연적으로 의료 및 안전 문제를 겪게 된다. 해외노동자는 일로 인해 병을 앓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치료 비용을 자신이 부담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회사를 통해서 국가에 기여금을 내는 것은 변함없다.²¹³

“건강이 악화됐지만, 여전히 하루에 12시간 일해야 했다. 오랜 기간 [더운 나라의 열기 속

²⁰⁵ KOR/16/0068.

²⁰⁶ KOR/21/0057. 또한 KOR/22/0010.

²⁰⁷ KOR/16/0068. 또한 KOR/16/0071.

²⁰⁸ KOR/21/0012.

²⁰⁹ KOR/21/0057. 또한 KOR/22/0010.

²¹⁰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2022), 682쪽.

²¹¹ KOR/22/0008.

²¹²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총회 보고서, A/70/362.

²¹³ KOR/22/0011. 또한 KOR/16/0071 참조.

에서] 일해서 노동자들 신장에 문제가 있었다.”²¹⁴ (남성, 2016년)

“3층 건물에서 떨어져서, 일을 안 하고 몇 달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일을 안 하고 돈을 벌지 못 할 때도 회사에 돈을 내야 했다. 모아둔 돈이 좀 있어서 아팠을 때 회사에 돈을 낼 수 있었다.”²¹⁵ (남성)

103. 취약성을 노리는 것도 유의미한 강제노동 지표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신 해외노동자는 해외 파견을 자원해서 나오고, 일부는 해외노동자로 뽑히기 위해 뇌물을 주기도 한다.²¹⁶ 해외노동자가 되면 본국에서는 불가능한 수준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개인이 노력을 통해 따낸 기회일 수 있다.²¹⁷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제도는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성질을 갖는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이야기 나눈 해외노동자는 대부분 자신이 어떤 형태로 계약되었는지, 해외에 처음 파견됐을 때 어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해외노동자 선발 과정도 차별적이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면담한 이탈자는 경험이 있고 성분이 좋은 노동자는 해외 파견을 나오고 싶어하는데, 해외 파견의 기회는 뇌물을 낼 수 있는 이들에게 주어진다고 설명한다.²¹⁸

“많은 주민이 해외로 나가서 건설 등의 부문에서 일하고 싶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노동자 선발은 굉장히 경쟁이 심하다. 가족, 친척, 친구 배경과 같은 특정 조건이 맞아야 선발될 수 있다.”²¹⁹ (남성)

104. 월급이나 근로 조건에 항의하여 조직적인 행동을 하거나 불만을 말할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는 위협으로 인해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상황이 유지된다. 노동자는 일을 잘 못하거나 규정을 위반할 시 송환될 수 있다고 위협받는다. 근무지를 이탈했다가 붙잡힌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송환된다.²²⁰

“보위원에게 복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물론 내 의도는 남으로 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를 체포하더니 수갑을 채웠다... 조만간 복송되는 상황이었다.”²²¹ (남성)

²¹⁴ KOR/16/0071.

²¹⁵ KOR/22/0011.

²¹⁶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2022).

²¹⁷ KOR/21/0026.

²¹⁸ KOR/20/0042, KOR/21/0022, KOR/22/0006.

²¹⁹ KOR/21/0011, 또한 KOR/22/0008, KOR/22/0009 .

²²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총회 보고서, A/70/362.

²²¹ KOR/22/0018.

V. 결론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은 광범위하고 여러 층위에 걸친 강제노동 제도를 통한 통제 속에서 착취당한다. 강제노동 제도는 국민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운영된다. 강제노동은 국가에게는 무급 노동을 제공하며, 국가는 강제노동을 수단으로 국민을 통제 및 감시하며 사상을 주입한다.
2. 강제노동은 국가의 교정 제도, 학교, 국가가 강제로 배정하는 직장, 군 징집, 돌격대, 인민반, 여성동맹, 해외노동자 제도를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제도에는 공통적인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데, 해당 침해는 강제노동을 구성하는 요건이기도 하다. 가령, 개인이 노동의 종류나 근무지 위치를 고를 수 없고, 노동에 대한 보수가 적절치 않거나 아예 제공되지 않고, 장시간 적절한 휴식이나 휴일 없이 노동하며, 작업 자체가 신체적으로 고되며, 적절한 직업 보건 및 안전 조치가 부재하고, 일과 관련된 상해나 질병에 대한 보건 의료 접근 부재 등의 문제가 있다. 노동조합을 구성할 권리를 부정하는 등의 다른 인권 침해로 인해 강제노동이 더욱 광범위하게 통용될 수 있다.
3.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또한 정부관계자가 업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노동자를 폭력으로, 또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으로 다루는 사례가 만연하다는 점도 기록했는데, 특히 구금 시설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이다. 돌격대로 파견된 경우나 군 징집병이 수행하는 작업 등 현장에서 장기간 파견되어야 하는 강제노동의 경우, 숙소나 식량 접근이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는 인권 침해 또한 발생하며, 영양실조나 기아 사례도 보고된다. 여기에 더해 현장으로 파견되는 경우, 여력이 있는 사람은 돈을 써서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 일부는 뇌물을 지급하여 아예 강제노동을 하지 않기도 한다. 성분이 낮은 경우 조건과 대우가 열악하고, 한층 더 고된 형태의 강제노동에 동원되기 쉬운 한편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낮다고 보기 때문에 해외노동자로 파견될 가능성은 떨어진다.
4. 해외 노동은 국가의 강제노동 제도와 인권 침해가 해외로 확장된 경우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신 노동자는 권리가 침해된 채 국가를 위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단으로만 이용되며, 노동자가 거둬들이는 수익의 상당 부분은 정부로 흘러 들어간다. 착취적이고 강압적인 노동 환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업체와 정부 당국이 오랜 시간 적절한 보상 없이 엄격한 감시 속에서 이동의 자유나, 사생활 및 정보접근에 대한 보장없이 적절한 식량이나 보건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부적절한 거주 환경 속에서 강제로 해외노동자를 일하게 만든다.
5. 강제노동 제도는 광범위하게 운영되는데, 젠더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게 미친다. 물리적으로 이동해야만 하는 강제노동 환경에서 여성은 성폭력에 더욱 취약해진다. 가령 구금 시설, 돌격대

배치, 군 징집 기간 중 배치 등의 상황이 포함된다. 여성은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동시에 고정관념으로 인해 여성에게 치중되는 역할도 해내야 하는데, 아이나 고령인 가족의 돌봄, 집안일 등을 포함한다. 한편 남성은 제대로 된 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아예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국가 배정 직장에 출근해야 하는 엄격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여성이 가장으로서 역할해야 하는 부담은 더욱 커졌는데, 그 결과 여성은 인신매매를 당한 후 해외에서 강제혼에 처하거나 매춘에 종사하는 등 소득을 올릴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젠더 기반 폭력의 인권 침해에 노출되는 정도가 심화됐다. 남성은 더 장기간 군에 징집되고 국가가 배정한 직장에 강제로 출근해야 하는 엄격한 요건에 따라 통제나 감시를 받는 정도가 더 심한데, 이는 남성이 정치적 소요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젠더적 관점에 따른 것이다. 한편 남성이 기혼 여성에 비해 생계를 꾸리기 위한 소규모 상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가 적다는 뜻하기도 한다. 아동은 학교와 청년동맹을 통한 강제노동에 취약한데, 한 달 가까이 현장으로 동원되는 경우도 있다.

6. 일부 사례에서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이들이 겪는 통제 및 착취의 정도와 처우가 “소유”의 경계선에 닿을 수 있는데, 이는 노예화를 금지하는 인권 의무의 위반일 뿐 아니라 반인도범죄로서의 노예화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구금 시설 내에서 혹은 돌격대에서의 강제노동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강제노동 사례에서 이동의 자유를 엄격히 통제하고, 통신 장비 접근을 비롯한 물리적 환경을 통제하며, 국가의 사상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밝혀질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위협이 가해지는 “생활 총화” 등을 통해 심리적으로도 통제하며, 무장한 경비를 두어 탈출을 방지하거나 저해하려는 조치를 취하거나, 업무 할당량과 관련하여 폭력이나 집단 체벌 등의 물리적 처벌을 실행하거나 처벌 가능성으로 위협하고, 성 및 젠더 기반 폭력이나 적절한 수준의 식량, 위생적인 생활 환경, 보건의료 접근성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가혹한 처우 및 학대가 이뤄지는 등의 특징이 있다. 반인도범죄를 포함한 범죄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은 우선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의무이다. 국내적으로 책임을 규명할 창구가 없는 상황에서, 국제공동체는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 국제사법제도를 통하거나 국내 관할권을 통한 소추를 통하여 책임 규명을 추진해야 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국제법상 금지된 강제노동 제도를 철폐하고 모든 형태의 노예제 또는 예속 상태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국민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노동을 중심에 둔 자발적인 노동 제도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노동 제도는 국민이 자신의 바람과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여야 한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구금 가능성을 들어 위협하는 등 노동을 강제하는 제도를 개인 노동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 학교나 대학에서부터 이러한 변화를 시작해야 하는데, 아동이 자신의 신체 및 정신적 능력을 개발하고 존엄성이 존중되고 의미가 있는 일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갈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학교 내에서 운영되는 아동 노동 제도도 폐지되어야 한다.
9. 본 보고서 별첨에 상세히 기술했듯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법에 따른 인권 의무가 있다. 또한 복수의 국내법을 채택했는데, 해당 법이 이행된다면 강제노동을 방지할 수 있다. 가령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근무 시간을 규제하고 유급 휴가를 보

장하며, 출산 휴가 및 비차별 조치를 포함한 여성 노동자를 위한 지원,²²² 아동권 보호, 직업 보건 및 안전, 보건의료 제공 등과 관련된 국내법 조항이 있다. 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는 앞서 기술한 국제 의무나 국내법이 이행되지 않는다.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상당수 개인이 점차적으로 소규모 상행위를 통해 생계를 꾸리고 가족을 돌보고 있기에, 해당국 정부는 착취 및 부정부패로부터의 보호 조치를 포함하여 이러한 상행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 감옥 및 기타 구금 시설 내 노동은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의 교정 및 사회 재활, 또한 석방 이후 지역사회에 다시 적응하고 재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체포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행정 법령을 근거로 노동형을 선고하는 관행을 중단하는 소극적 의무를 우선적으로 이행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개혁을 시작할 수 있다. 아울러 독립적인 사법부와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좀 더 광범위한 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또한 국제인권법상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굴욕적 대우에 이를 수 있는 환경 및 대우를 해결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가령 구타를 통한 수감자 징계, 특히 여성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적절한 휴식 없는 장시간 노동, 질이 떨어지는 충분치 않은 양의 식사 제공, 보건의료 부재, 고된 노동에 따라 필요한 보건 및 안전 조치 미비 등을 포함한다.
12. 국제공동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경제 협력 시 엄격한 실사를 실시하고,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²²³ 및 강제노동과 현대판 노예제를 척결하고자 마련된 기타 국제 표준에 근거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공급망을 엄격하게 감시함으로써, 강제 노동을 철폐하는 과정에 기여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협력하여 노동 이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원국은 제재 조치와 관련된 안전보장이사회 결정에 따라, 또한 인권 의무에 따라 노동이 자발적으로 이뤄지며, 노동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양질의 노동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엄격한 안전 조치 및 모니터링 조건이 포함된 계약을 맺도록 한다. 이는 해당국 영토 및 관할권 내에서 해외노동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인권 침해 사례 전수를 조사하는 의무를 포함한다.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원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하여금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는 노동 개혁을 포함하여 인권을 중심에 둔 발전 방식을 채택하거나 최소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독려해야 한다.

²²² 남성 육아 휴직은 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 제도상 보장되지 않는다.

²²³ HR/PUB/11/04, 제네바, 2011.

VI. 권 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다음을 권고한다.

- 국제법에 반하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철폐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노동 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통해 노동자 권리를 중심에 두도록 한다.
- 노예제 및 노예제 유사 관행을 철폐하고, 국내법상 노예제 및 노예제 유사 관행의 정의를 정확히 명시하고, 노예화를 형사 범죄로 정의하여 범죄의 심각성에 부합하는 제재 조치로 처벌하도록 한다.
- 강제노동과 노예제를 철폐하는 정책을 고안하고 개혁을 이행하는 데 있어, 남성과 여성, 남아와 여아가 처한 서로 다른 상황 및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점을 효과적으로 다룬다.
-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저임금 직종에 여성을 배정하는 등 노동과 관련하여 여성을 차별적으로 다루는 국내법 및 정책을 검토한다. 이는 노동과 관련하여 젠더에 따른 차별적인 관행을 금지하려는 목적이다.
-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근무 시간을 규제하고 유급 휴가를 보장하며, 직업 보건 및 안전, 보건 의료 제공, 직장 내 업무 접근성 및 처우에 있어서의 비차별, 모성 보호, 아동권 보호,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의 권리 보호 등을 보장하는 기존 국내법을 이행한다.
- 보육에 있어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부모 모두가 직업과 가정 내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성의 출산 휴가에 더해 남성의 육아 휴직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내법을 개정한다.
- 강제노동 및 노예화를 철폐하는 정책을 고안하고 개혁을 이행하는 데 있어, 장애인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특히 주의를 기울인다. 가령 장애인이 취업시 선택 및 동의 의사를 자유로이 표하며, 강압을 받지 않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 노동자 개인이 하고 싶은 일과 일할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강제적 성격을 갖는 국가의 일자리 배정을 중단하고, 국가가 배정한 직장에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인을 노동 단련대에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벌법을 폐지한다.
- 하고 싶은 일과 일할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어, 채용이나 근로 조건과 관련하여 젠더 및 사회경제적 지위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등 비차별의 원칙을 보장한다.
-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독립적인 노동조합 설립을 가능하게 하는 등 직장의 민주화가 가능하도록 개혁 조치를 취한다.
- 독립적인 노동조합 설립 허용에 더해, 국제노동기구 가입국이 되는 데 필요한 개혁 및 조치를 취하

며, 아울러 특히 강제노동, 아동 노동, 결사의 자유 등과 관련된 협정을 중심으로 국제노동기구 협정 당사국 가입을 고려한다.

- 인민반을 통한 강제적인 노동 동원을 중단하고, 긴급 상황과 소규모의 공동체 의무 등 시민적 의무 수행 시 자발성에 따른 참여가 되도록 보장하며, 이는 국가와 국민간 맺어진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계약을 바탕으로 한다.
- 식량과 같은 주요 상품 및 서비스 생산 및 교환을 포함하여,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정당한 활동을 범죄화하지 않는다.
- 노동에 동원하는 수단인 돌격대를 폐지한다.
- 강제된 노동력의 공급책으로 군 징집병을 활용하지 않는다.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가 의무를 준수하여, 학생이 사회경제적 배경 또는 젠더와 무관하게 자신의 관심사, 강점 및 장래희망에 따라 공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교육 제도를 개혁한다.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가 의무를 준수하여, 학교 제도를 통한 아동 노동 활용을 중단한다.
- 아동이 교육 과정의 일부로 “경제 과제”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며, 관련하여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이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보장한다.
- 젠더, 사회적 지위 또는 부모의 정치적 견해에 따른 아동 대상 차별을 중단한다.
- 공식 및 비공식 부문에서 18세 미만 아동을 위한 작업에 동원하는 일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노동 및 아동 관련 법규를 개정한다.
- 기존 국내법을 비롯하여 관련된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하는 직업 보건 및 안전 제도를 마련한다.
- 안전보호복을 포함하여 노동자에게 적절한 안전 장비를 제공한다.
- 업무상 부상 및 질병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보건 의료 서비스 접근을 보장한다.
- 강제노동 관련 사례를 포함하여 인권 침해 건을 신고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안전하며 비밀이 보장되는 창구 접근을 노동자에게 제공한다.
- 감옥 내 노동 제도를 개혁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개인의 교정 및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이 이뤄지도록 하며,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넬슨만델라규칙), 여성수감자 처우와 여성 범죄자 비구금조치에 관한 유엔 규칙(방콕규칙)을 포함한 국제 인권 표준을 보장하도록 한다.
- 수감자가 수행하는 작업 등을 포함하여 수감자의 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로 감옥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 교정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구금 시설 내 노동 조건 및 처우가 넬슨만델라규칙을 준수하는지 살피고 점검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방문이 가능한 제도를 도입한다.

- 수감자 권리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감시 및 책임 규명 메커니즘을 보장하고, 수감자가 강제노동 관련 사례를 포함하여 인권 침해 혐의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하며 비밀이 보장되는 창구 접근을 제공한다.
- 노동 제도를 통한 수감자 대상 인권 침해 혐의를 공정하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즉각 조사한다. 가령 수감자를 구타하거나, 업무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식량을 주지 않거나, 또는 이들이 성폭력을 비롯한 모든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를 당하도록 하는 등의 사례를 포함한다.
- 반인도범죄에 달할 수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을 인지하고, 이러한 침해를 종식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조치는 침해 행위 혐의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고 책임있는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의지와 역량을 발휘하는 것을 포함한다.

국제공동체에 다음을 권고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경제 협력에 있어 엄격한 실사를 반드시 수행하고,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및 강제노동과 현대판 노예제를 척결하고자 마련된 기타 국제 표준에 근거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공급망을 엄격하게 감시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협력하여 노동 이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원국은 제재 조치와 관련된 안전보장이사회 결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노동이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노동자에게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고, 양질의 노동 환경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해당국 영토 내에서 해외노동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 혐의 사례 전수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즉각 조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엄격한 안전 조치 및 모니터링 조건이 포함된 계약을 맺도록 한다.
- 국가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유엔의 임무 수행을 가능토록 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강제노동 관행에서 벗어나 노동자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관련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를 상대로 국제적 책임 규명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조치를 취한다. 이는 안전보장이사회가 동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임시 국제재판소 또는 기타 유사 메커니즘을 설립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 가능한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국제 범죄를 자행한 혐의가 있는 이들을 수사 및 소추하며, 이때 역외관할권 및/또는 보편관할권 원칙을 근거로 한 방안도 활용한다.

[별첨]

별 첨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제 인권 의무 및 강제노동 관련 국제 표준

별 첨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노동자에 관한
국내법 체계

별 첨 3: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면담한 이탈자의
증인 진술

별첨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제 인권 의무 및 강제노동 관련 국제 표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노동에 대한 권리 및 직장에서의 권리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국제 인권 조약법상 및 국제관습법상 의무를 포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 회원국이므로 유엔 헌장을 준수할 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²²⁴ 이는 유엔 헌장 제55조 및 제56조를 포함한다.²²⁵

제55조

사람의 평등권 및 자결원칙의 존중에 기초한 국가 간의 평화롭고 우호적인 관계에 필요한 안정과 복지의 조건을 창조하기 위하여, 유엔은 다음을 촉진한다.

- (a) 보다 높은 생활수준, 완전고용 그리고 문화 및 교육상의 국제협력
- (b) 경제·사회·보건 및 관련 국제문제의 해결 그리고 문화 및 교육상의 국제협력
- (c)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

제56조

모든 회원국은 제55조에 규정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기구와 협력하여 공동의 조치 및 개별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유엔 총회는 1945년 10월 24일 유엔 헌장이 효력을 발휘한 이후 이어 1948년 12월 10일에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회 각 기관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고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는 해당 권리와 자유의 옹호를 위한 구제조치에 대한 동등하고 효과적인 접근을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세계인권선언은 헌장에 담긴 “인권”이란 회원국에게 무엇을 시사하는지 30개의 간결한 조항을 통해 설명하는데, 여기에는 직장에서의 권리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된다.

²²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9), 제26조부터 제33조.

²²⁵ 유엔 헌장 서문, 제1조, 제2조, 제13조, 제68조도 인권을 언급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 또는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1. 모든 사람은 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생존을 보장하며,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보장법으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 채택 후 유엔은 세계인권선언 30개 조항에 수반되는 세부내용을 기술한 구체적인 인권 조약을 채택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 핵심 인권 조약 아홉 개 중 다음 다섯 개를 비준했다.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81년 9월 14일 비준)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81년 9월 14일)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2001년 2월 27일)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90년 9월 21일)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2016년 12월 6일)²²⁶

상기 조약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노동 관행과 관련하여 법적 구속력을 띠는 의무를 지닌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에 놓이지 않는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2. 어느 누구도 예속상태에 놓이지 않는다.
3. (a) 어느 누구도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b) 제3항(a)의 규정은 범죄에 대한 처벌로 중노동을 수반하는 구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에서, 권한 있는 법원의 형의 선고에 따라 중노동을 시키는 것을 배제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c) 이 항의 목적상 “강제 또는 강요된 노동”이라는 용어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 (i) (b)에서 언급되지 않은 작업 또는 의무로서, 법원의 합법적 명령으로 구금되어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구금으로부터 조건부 석방 중에 있는 사람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
 - (ii) 군사적 성격의 의무 및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는 국가의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법률상 요구되는 국민적 의무
 - (iii) 공동체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난 시에 부과되는 의무
 - (iv) 통상적인 시민의 의무에 속하는 작업 또는 의무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조항 중 직장에서의 권리 보호와 직결되는 여타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22조

1.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타인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국가안보, 공공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공중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하며 법률에 규정된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부과될 수 없다. 이 조는 군대와 경찰의 구성원이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3. 이 조의 어떤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1948년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그 협약에 규정된 보장을 침해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²²⁶ 이외 핵심 인권 조약으로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있다.

제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국가안보, 공공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공중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하며 법률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부과될 수 없다.

제19조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를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생각을 구하고 받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규정되고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된다.
 - (a) 타인의 권리 또는 평판의 존중
 - (b)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공중도덕의 보호

제9조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근거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자신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2.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 시에 체포 이유를 고지 받으며, 자신에 대한 피의사실을 신속히 고지 받는다.
3. 범죄 혐의로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 행사 권한을 부여받은 그 밖의 공무원에게 신속히 회부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을 구금하는 것은 일반 원칙이 될 수 없으며, 그 밖의 모든 사법절차 단계에서의 재판을 위하여, 그리고 필요한 경우 판결 집행을 위하여 출석할 것이라는 보증하에 석방될 수 있다.
4. 체포 또는 구금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구금의 합법성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그의 구금이 합법적이지 않은 경우 그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5. 불법적인 체포 또는 구금의 피해자는 누구든지 집행가능한 배상청구권을 가진다.

당사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이행을 감독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2001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행 상황을 마지막으로 검토했다.²²⁷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해당국의 사회주의로동법 제2장, 특히 제14조와 제18조가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8조와 부합한지에 대한 우

²²⁷ CCPR/CO/72/PRK. 해당국의 3차 정기보고서는 2004년 1월 1일 기한을 넘겨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았다.

려를 표했다.²²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내법 체계 분석내용은 동 보고서 별첨 제2호에 담겨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노동권과 관련하여 다음의 권고도 했다.

27. 위원회는 공공부문의 고위급 여성 비율이 낮은 점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여타 경제부문 내 여성의 책임권한을 비롯한 대표성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부재한 점에도 우려를 표한다.

당사국은 특히 고위급에서의 공공부문 여성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3조 및 제26조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주요 경제부문 내 여성의 책임권한이나 보수 등 여성의 지위에 관한 통계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은 직장에서의 권리를 다루는 핵심 인권 조약 중 하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중요한 의무를 지운다.

제6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를 인정하며,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이 근로권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조치에는 개인에게 기본적인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착실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과 생산적인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및 직업의 지도, 훈련계획, 정책 및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a)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한 다음의 것을 제공하는 보수

- (i)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 특히 여성에게 대하여는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와 함께 남성이 향유하는 것보다 열등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보장
- (ii) 이 규약의 규정에 따른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

²²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노동법 제14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근로자들은 공산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의 담당자들이다.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는 것은 공민의 영예이며 가장 신성한 의무이다. 공민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보람찬 로동에 자원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8조는 “사회주의로동규율은 자각적규율이며 사회주의로동규율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근로자들의 응당한 의무이다. 근로자들은 사회주의로동규율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제정된 절차를 밟지 않고 마음대로 직장을 리탈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 (b)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 (c) 연공서열 및 능력 이외의 다른 고려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직장에서 적절한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 (d) 휴식, 여가 및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급휴일

제8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 (a) 모든 사람은 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단체의 규칙에만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할 수 없다.
- (b)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합 또는 총연합을 설립하는 권리 및 총연합이 국제노동조합 조직을 결성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권리
- (c) 노동조합은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공공질서를 위하여거나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활동할 권리
- (d) 특정국가의 법률에 따라 행사될 것을 조건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

2. 이 조는 군인, 경찰 구성원 또는 행정관리가 전기한 권리들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된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제10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1.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에 대하여는, 특히 가정의 성립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이 부양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에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보호와 지원이 부여된다. 혼인은 혼인의사를 가진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 하에 성립된다.
2. 임신부에게는 분만 전후의 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보호가 부여된다. 동 기간 중의 근로 임산부에게는 유급휴가 또는 적당한 사회보장의 혜택이 있는 휴가가 부여된다.

3. 가문 또는 기타 조건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어린이와 연소자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와 원조의 조치가 취하여진다. 어린이와 연소자는 경제적, 사회적 착취로부터 보호된다. 어린이와 연소자를 도덕 또는 건강에 유해하거나 또는 생명에 위험하거나 또는 정상적 발육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노동에 고용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당사국은 또한 연령제한을 정하여 그 연령에 달하지 않은 어린이에 대한 유급노동에의 고용이 법률로 금지되고 처벌될 수 있도록 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이행 감독을 책임지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는 2003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행 상황을 마지막으로 검토하고,²²⁹ 직장에서의 권리에 관한 조항의 이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32.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고 이후 국제노동기구의 주요 협약을 적절한 시기에 비준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당사국이 필요한 법률개혁을 가속화하여 국제노동기구의 노사정 삼자 대표제 기준을 충족할 것을 권고한다.

34. 위원회는 당사국이 입법조치를 통해 모두가 직업과 직장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독려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는 보고서 문단 14에서 “국가가 의무적 일자리를 배정하는 현 제도는 노동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며, 개인이 직업이나 직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35. 위원회는 일자리와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 해외로 떠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처벌을 폐지할 목적으로 국내법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36. 위원회는 당사국이 독립적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파업할 권리 등의 노동조합권과 관련한 국내법을 검토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제8조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37. 위원회는 당사국이 제3차 정기보고서에서 가족수당, 장애수당, 노령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상 혜택의 수급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독려한다.

38. 위원회는 당사국이 사회복지지출과 취약계층 공공부조에 대한 예산을 적절한 시기에 증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한다. 또한 구직활동을 하는 이들, 특히 여성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 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권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동과 연소자를 경제적, 사회적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조항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²²⁹ E/C.12/1/Add.95. 해당국의 3차 정기보고서는 2008년 6월 30일 기한을 넘겨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았다.

제32조

1.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이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그밖의 국제 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 (b)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의 마련
 - (c) 이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 제재수단의 규정

동 협약의 이행을 감독하는 아동권리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행 상황을 2017년에 마지막으로 검토했다.²³⁰ 아동권리위원회가 최종견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시한 권고에는 아동 노동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아동 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54. 국내법상 아동 노동은 금지되어 있고, 아동의 “학교 실습” 참가 의무가 일 년에 삼 주 뿐이기 때문에 아동 노동은 폐지되었다는 당사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교육, 신체적·정신적 발달과 안녕을 방해할 수 있는 광범위한 노동과제가 아동에게 부과된다는 정보에 대해 여전히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상당히 우려한다.
 - (a) 당사국 노동법은 18세 이하 아동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노동을 금지하지 않는다.
 - (b) 일과 중 상당 시간을 (경제 과제라는 명목 하에) 자원하여 농장이나 광산에서 일하거나 숲에서 나무를 하거나 이웃 및 마을에서 김매기를 하거나 도로를 보수하거나 동상을 청소하거나 산림화 사업에 참여하거나 건설 작업에 참여하도록 요구 받는다. 이는 아동의 교육, 건강, 휴식 및 여가에 대한 권리를 저해하며, 이러한 작업에서 빠지려면 돈을 대신 내야 하는 관행이 있다.
 - (c) 아동은 대규모로 농업에 동원되기도 하는데, 하루 작업 시간이 상당히 길며 때로는 한 달 가량 동원되기도 하며, 해당 기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낸다.
 - (d) (군과 유사한 청년 건설 여단인) 돌격대에 16세 및 17세 아동을 수용하여 10년간 일을 하기도 한다. 돌격대의 경우 노동 시간이 길고 신체 노동 강도가 강하며 아동의 교육 접근성이 제한된다.
55. 최종견해(CRC/C/PRK/CO/4, 문단 61)를 상기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목표 8.7을 참고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230 CRC/C/PRK/CO/5.

- (a) 18세 이하 아동이 공식·비공식 부문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노동에 고용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노동 및 아동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 (b) 아동이 교육 과정의 일부로 “경제 과제”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며, 관련하여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이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즉각 조치를 취한다.
- (c) 아동이 집단 농촌동원 참가를 강요 받지 않도록 보장하며,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최저연령 및 노동시간 제한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을 둔다.
- (d) 18세 이하 아동을 돌격대에 배정하는 관행을 금지하고, 모든 아동에게 동등하게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e) 국제노동기구의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1999년, 제182호) 및 최저연령 협약(1973년, 제138호) 비준을 목적으로 국제노동기구 가입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의 아동 노동 철폐에 관한 국제프로그램의 기술지원을 요청한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은 서문에서 “가정과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부모의 역할”을, 제5조에서는 “자녀의 양육과 발전에 있어서 남녀의 공동책임”을 강조한다. 이는 국가가 가정과 직장에서 양 부모의 동등한 역할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동 협약에는 노동권과 성평등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조항도 있다.

제11조

1. 당사국은 고용분야에서 남녀 평등의 기초위에 동일한 권리 특히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모든 인간의 불가침의 권리로서의 근로의 권리
 - (b) 동일한 채용기준의 적용을 포함한 동일한 고용기회를 보장받을 권리
 - (c) 직업과 고용의 자유로운 선택권, 승진, 직장안정 및 역무에 관련된 모든 혜택과 조건을 누릴 권리, 그리고 견습, 고등직업훈련 및 반복훈련을 포함한 직업훈련 및 재훈련을 받을 권리
 - (d) 수당을 포함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의 질의 평가에 있어 동등한 처우와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 (e)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 및 사회보장, 특히 퇴직, 실업, 질병, 병약, 노령 및 기타 노동 무능력의 경우에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 (f) 건강보호에 대한 권리 및 생식기능의 보호조치를 포함한 노동조건 안전에 대한 권리
2. 당사국은 결혼 또는 모성을 이유로 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며 여성의 근로에 대한 유효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임신 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혼인여부를 근거로 한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것
 - (b) 종전의 직업, 선임순위 또는 사회보장 수단을 상실함이 없이 유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회보장급부를 포함하는 출산휴가제를 도입하는 것

- (c) 특히 아동보육 시설망의 확립과 발전의 촉진을 통하여, 부모가 직장에서의 책임 및 사회생활에의 참여를 가사의 의무와 병행시키는데 도움이 될 필요한 사회보장 혜택의 제공을 장려하는 것
- (d) 임신중의 여성에게 유해한 것이 증명된 유형의 작업에는 동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

당사국 이행을 감독하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행 상황을 2017년에 마지막으로 검토²³¹하면서 노동권과 관련한 몇 개의 권고를 채택했다.

고용

35. 위원회는 당사국이 여성의 고용 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환영한다. 또한 2015년에 사회주의노동법과 여성권리보장법을 개정하여 여성 육아휴직 기간을 150일에서 240일로 연장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이에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음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 (a) 노동인력이 여전히 성별을 기준으로 분리되며, 노동 관련 법률 및 지시는 여성을 특정 직종에 배정함으로써 여타 직종에서는 배제하고, 이때 여성 개인의 잠재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성이라는 집단에 부과한 특성을 근거로 하며 직장 내 성평등 달성을 저해하는 점
- (b) 계속되는 여성의 고위직 접근 제한
- (c) 남성의 정년은 60세인 데 반해 여성의 정년이 55세로 설정되어 연금혜택, 경제적 독립성, 의사결정직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점
- (d) 동일임금에 대한 통계 부재
- (e) 유급 또는 무급 남성 육아휴직의 부재

36.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 (a)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한하거나 여성에게 저임금 일자리를 배정하는 직업배정표를 비롯한 노동 관련 법률과 정책을 검토하여 직장 내 성별 분리를 폐지한다.
- (b) 여성의 관리자·지도자 직급 진출을 증진하며, 이를 위해 할당제 또는 속진임용제도 등의 임시특별조치를 도입한다.
- (c) 정년을 통일하기 위해 노동법을 검토하여 여성에게 보다 많은 고용기회와 동등한 연금혜택을 제공한다.
- (d) 동일임금에 대한 통계를 정기적으로 마련한다.
- (e) 가정 내 남녀간 공평한 역할 배분을 증진하고, 이를 위해 출산 후 남성 육아휴직 또는 공동 육아휴직 의무화를 도입한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권고도 제시했다.

²³¹ CEDAW/C/PRK/CO/2-4.

37. 위원회는 직장 내 여성을 대상으로 성희롱과 성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것에 대해 당사국이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 점, 직장 내 성희롱을 명시적으로 불법화하는 법률이 부재한 점, 그리고 구제를 받으려는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배치된 이의 제기 제도와 보호조치가 부족한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마지막으로 2012년에 개정된 형법을 통해 복종관계의 여성에게 강요하여 성교한 자에 대한 처벌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인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38. 위원회는 당사국이 직장 내 성희롱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불법화하는 법률을 채택하고,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관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밀이 유지되는 독립적이고 안전한 제도를 마련하며,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비롯한 효과적 구제수단에 피해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형법을 검토하여 강요에 의한 성교를 비롯한 직장 내 강간을 불법화하고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하며, 직장 내 강간에 대한 정의는 자발적 동의의 부재를 근거로 하고, 강압적 정황을 반영할 것을 권고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장애인의 노동권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의무도 지닌다.

제27조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한다. 이는 장애인이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시장과 근무환경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용할 직업을 통하여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포함한다. 당사국은 고용기간 동안 장애를 입은 사람을 포함하여, 특히 다음의 사항을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노동권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 (a) 모집, 채용 및 고용, 고용연장, 승진,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의 조건을 포함하여 고용관련 제반 사항에 관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 (b)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업무에 대한 동등한 기회와 보수를 포함한 공정하고 우호적인 근무 환경,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조건, 그리고 고충처리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한다.
- (c)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노동조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d) 일반적인 기술 및 직업 지도 프로그램, 직업소개 서비스, 직업훈련 및 지속적인 훈련에 대하여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e) 구직, 취업, 직업유지 및 복직에 대하여 지원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고용기회와 승진을 촉진한다.
- (f) 자영업, 기업경영, 협동조합의 개발 및 창업의 기회를 촉진한다.
- (g) 공공부문에 장애인을 고용한다.
- (h)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프로그램, 장려금 및 그 밖의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정책과 조치를 통하여 민간부문에서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한다.

- (i) 작업장에서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편의²³²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 (j) 공개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이 근로경력을 습득하도록 촉진한다.
- (k) 장애인을 위한 직업적 재활 및 전문적 재활, 직업유지 및 복직 프로그램을 촉진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노예상태 또는 강제노역에 처하지 아니하고, 강요되거나 강제된 노동으로부터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되도록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년 12월 19일에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행을 감독하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첫 정기보고서를 제출했고, 위원회의 쟁점목록에 대한 답변을 2023년 하반기에 제출했다.

국제노동기구 가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국제노동기구 협약에도 일체 가입하지 않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국제노동기구 헌장에 따른 의무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일겠다고 전달하면 자동으로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이 된다.

국제노동기구 헌장에 담긴 실질적 의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²³³

1. **노사정 삼자주의(tripartism)**를 따른다. 회원국은 국제노동총회에 노사정 삼자 대표단이 참가하는 것에 동의한다. 대표단에는 해당국의 정부 대표 두 명 및 노사 대표 각 한 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부, 사용자, 노동자 대표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2. **직장 내 기본 원칙과 권리를 실현한다.**²³⁴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일원으로서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s)에서 다루는 기본권 관련 원칙을 신의 및 국제노동기구 헌장²³⁵에 따라 존중, 증진, 실현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b)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강요된 노동을 철폐하며 (c) 아동 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하고 (d) 고용 및 직업에 관한 차별을 철폐한다.
3. **비준한 국제노동협약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비준하지 않은 협약 및 권고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국제노동기준은 비준 회원국에 구속력을 지니는 “협약” 또는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는 “권고”의 형태로 채택된다. 회원국의 국제노동협약 비준은 의무가 아니지만 강

²³²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는 “합리적인 편의제공”이라 함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향유 또는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것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필요하고 적절한 변경과 조정을 의미한다”고 명시한다.

²³³ Membership in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국제노동기구 회원), 정보 안내, 제네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2014.

²³⁴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 1998.

²³⁵ 국제노동기구는 2021년 4월 1일 기준, 아홉 개 협약을 기본 협약(fundamental convention)으로 지정하고 회원국이 이를 비준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아홉 개 기본 협약은 다음과 같다: 강제노동 협약(1930년, 제29호) 및 그 의정서(2014년, P029);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 협약(1949년, 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1949년, 제98호); 동등보수 협약(1951년, 제100호); 강제노동 폐지 협약(1957년, 제105호);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1958년, 제111호); 최저연령 협약(1973년, 제138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1999년, 제182호).

력히 권장되고 있으며, 노사정 삼자가 참여하여 노동기준 비준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은 노동기준의 적용은 “감독 제도”에 의해 관리된다. “감독제도”에 따라 독립 기구와 노사정 삼자 기구 뿐 아니라 “특별 절차(진정 또는 제소 등)”에 의한 주기적인 검토가 진행된다.

4. 노동과 관련하여 중요도가 동등한 네 개의 상호의존적 전략목표를 추구한다.²³⁶ 이는 (1) 고용 증진, (2) 사회적 보호조치 수립 및 개선, (3) 사회적 대화 및 노사정 삼자주의 증진, (4) 직장에서의 기본 원칙 및 권리 존중, 증진 및 실현을 포함한다.
5. 노동기준을 들어 특정 국가의 비교우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되, 동시에 직장 내 기본 원칙과 권리 침해를 근거로 들거나 사용하여 비교우위를 취하지 않는다.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주요 유엔 인권 메커니즘 중 하나인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대체한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가 출범했던 2006년에 설립되었다. 이 신규 메커니즘은 “동료 평가”로 이뤄진다. 유엔 회원국들이 동료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담은 권고를 제시한다. 모든 국가의 주권평등 원칙에 따라, 검토 대상국은 검토 마지막 단계에서 이행을 위해 수용할 권고와 거부할 권고를 선택하게 된다. 유엔의 193개 회원국 모두 5년마다 검토를 받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현재까지 세 번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를 거쳤는데, 가장 최근에는 2019년에 실시되었다.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를 실시할 때 회원국들은 앞서 언급된 국가의 조약상 의무를 반영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고려를 위해 권고를 제시하며, 여기에는 노동권 관련 의무도 포함된다.

2014년 제2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²³⁷

- 124.75 특히 식량권, 교육권, 노동권과 관련하여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한다. (이탈리아)
- 124.138 국민에게 적합하고 보다 안전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한다. (니카라과)
- 124.128 집회 및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개인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캐나다)
- 124.130 국민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확대한다. (인도네시아)
- 124.151 모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방글라데시)
- 124.180 농촌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조치를 취한다. (쿠바)

²³⁶ ILO Declaration on Social Justice for a Fair Globalization(국제노동기구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 정의에 관한 선언), 2008.

²³⁷ A/HRC/27/10.

2019년 제3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²³⁸

- 126.180 여성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특정하고 개정할 목적으로 법률을 강화하고, 이때 특히 교육 및 고용 접근성을 다루는 조항에 집중한다. (코트디부아르)
- 126.199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도입한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의 물리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인식제고 캠페인을 확대한다. (싱가포르)
- 126.138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특히 표현의 자유 및 정보에 접근할 자유와 관련된 법률과 국가 정책을 검토한다. (코스타리카)

특별절차

세 개의 유엔 주요 인권 메커니즘 중 나머지 하나는 인권이사회가 임명하는 특별절차 제도이다. “특별절차”는 개인 또는 그룹 형태의 독립적 인권 전문가를 아우르는 명칭으로, 이들은 인권 사안에 대해 보고하고 자문을 제공한다. 이들을 가리키는 명칭은 특별보고관, 특별대표, 실무그룹, 독립전문가 등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별 특별보고관이 배정된 국가 중 하나이다.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 이사회의 위임권한을 받아 해당국의 상황을 살피고, 해당국 정부가 부족한 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류를 도모한다.²³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당 특별절차를 인정하거나 해당 특별절차와 협력하지 않는다.

해당 위임권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변화하는 인권 상황에 대한 최신 동향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당 위임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위임권한 수행자의 국가 방문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특별보고관은 일년에 두 번 주변 지역을 방문하여 정부 관계자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탈자를 비롯한 비정부 관계자를 만난다. 이를 기반으로 매년 인권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타 관련국, 그리고 유엔이 어떻게 부족한 부분에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 권고를 제시한다.²⁴⁰

²³⁸ A/HRC/42/10.

²³⁹ 인권위원회 결의 2004/13에 의해 설립.

²⁴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총회 보고서, A/75/388.

별첨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노동자에 관한 국내법 체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내 법제도를 통해 노동권에 관한 중요한 보호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해당 기준과 현실 간의 큰 격차는 동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다.

직업을 선택할 자유

사회주의로동법 (이하 “로동법”) 제1장 제1조는 “사회주의 하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라고 명시한다.

로동법은 자율적인 직업 선택권을 명시한다. 제5조는 “모든 근로자들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고 명시한다. 이는 헌법 제70조에도 언급되는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 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고 해당 조항은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로동법 제4조는 “사회주의 하에서 공민은 로동에 참가할 의무를 지닌다.²⁴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능력 있는 모든 공민은 자기 능력에 따라 사회적으로 로동에 참가한다”고 규정한다.

근무시간과 유급휴가

로동법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방침에 따라 전인민경제적 범위에서 사회적으로 로동을 계획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직한다.”

국내법에 의해 근무시간과 유급휴가 금액이 규정되어 있다. 로동법 제12조는 “국가는 근로자들이 로동과정에서 소모한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며 전반적 무상치료제와 선진적인 로동보호제도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고 명시한다.²⁴² 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보호법(이하 “로동보호법”)이 보충하는데, 제3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로동과 휴식을 옹기 결합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문화정서생활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 조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근로자들의 로동과 휴식조직을 짜고들어 그들이 건강한 몸으로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²⁴¹ 노동 의무에 강제, 강요, 처벌 또는 처벌의 위험이 수반된다면 강제노동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²⁴²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하 “헌법”) 제56조에도 명시되어 있다.

로동법 제16조는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로동시간을 7시간 또는 6시간으로 한다. 3명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여성로동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⁴³

로동법 제33조는 다음과 같이 재차 강조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조직에서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학습하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로동과 휴식과 학습을 옹기배합하여 근로자들의 로동을 정규화하고 학습을 정상화하며 휴식을 잘 보장하여야 한다.”²⁴⁴

로동법 제63조는 초과근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근로자들은 하루로동시간이 끝나면 휴식한다. 경제기관, 기업소들은 근로자들에게 시간외 로동을 시킬 수 없다.”²⁴⁵

아울러 로동보호법 제37조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근로자들에게 정해진 로동시간을 초과하여 로동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간외 로동을 시키려 할 경우에는 해당 로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내법은 주6일제를 보장하는데, 노동법 제64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근로자들은 주에 하루씩 휴식을 보장받는다. 국가적으로 제정된 명절날과 일요일은 쉬는 날로 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쉬는 날에 근로자들을 로동시킨 경우에는 한주일 안으로 반드시 대휴를 주어야 한다.”²⁴⁶

유급휴가에 대해 제65조는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은 해마다 14일간의 정기휴가와 직종에 따라서 7일 내지 21일간의 보충휴가를 받는다”고 규정한다.²⁴⁷

여성 근로자 관련 별도 조항

로동법 제59조는 “국가는 여성근로자들의 로동보호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린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로동보호위생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여성들에게는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작업을 시킬 수 없으며 젖먹이 아이를 가졌거나 임신한 여성근로자들에게는 아

²⁴³ 참고로, 국제노동기구 감독기구들은 여타 관할권의 유사한 조항을 차별적이라고 판단했다. 가정의 의무를 대부분 여성이 부담한다고 가정하여, 동등한 고용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이다. 근무 시간에 관한 내용은 로동보호법 제36조에도 언급된다: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힘든 부문과 특수한 조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그보다 짧게 정할 수 있다. 로동시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 중앙로동행정기관이 한다.”

²⁴⁴ 헌법 제30조 또한 하루 근무 시간은 “8시간이다”라고 명시한다.

²⁴⁵ 참고로 초과근무는 상한선이 있고 합의에 의한 것이라면 국제 노동 기준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다. 고용주들은 생산 변동사항에 대응해야 하고, 노동자들은 초과근무를 소득 증대의 기회로 여겨 반기는 경우가 흔하다. 국제노동기구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권고(1962년, 제116호)를 참조한다.

²⁴⁶ 로동보호법 제39조에도 언급된다.

²⁴⁷ 헌법 제71조 및 로동보호법 제40조 참조.

간로동을 시킬 수 없다”고 규정한다.²⁴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성권리보장법(2010년 최초 채택, 2015년 최종 수정보충, 이하 “여성권리보장법”)은 제26조부터 제35조까지 여성의 노동권을 규정한다. 여성권리보장법 제31조는 “3명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여성노동자의 하루 노동시간은 6시간이며 생활비를 전액지불한다”고 명시한다. 해당 법 제26조는 “녀성은 노동분야에서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녀성들이 남성과 평등하게 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와 로동 보호를 받을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로동법은 여성 육아휴직만을 제66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녀성근로자들은 정기 및 보충휴가 외에 근속년한에 관계없이 산전 60일, 산후 180일 간의 산전산후휴가를 받는다”고 명시한다.²⁴⁹ 남성 육아휴직 관련 조항은 없다.

여성권리보장법 제34조는 부당해고를 금지하는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본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혼, 임신, 산전산후휴가, 젖먹이는 기간 같은 것을 이유로 녀성을 직장에서 내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헌법 제77조는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노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고 규정한다.

아이 돌봄과 관련하여 로동법 제3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국가는 녀성근로자들이 사회적으로에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녀성들이 일하는데 편리하게 탁아소, 유치원, 아동병동, 편의시설을 꾸려야 하며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녀성들이 희망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가내작업반, 가내협동조합 등을 조직하여야 한다.”²⁵⁰ 더하여, 여성권리보장법 제27조는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녀성들이 사회적으로에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직장에 다니는 녀성들이 로동에 마음놓고 참가할 수 있도록 탁아소, 유치원, 편의시설 같은 것을 잘 꾸리고 바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²⁴⁸ 로동보호법 제24조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임신한 녀성근로자들에게 산전산후휴가에 들어가기 전까지 험한 일을 시키며 젖먹이어린이를 가진 녀성근로자들에게 젖먹이는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여성권리보장법 제30조는 임신부나 유아를 키우는 여성에게 야간근무를 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로동보호법 제38조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녀성근로자들에게 체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힘든 로동, 건강에 해롭거나 위험한 로동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젖먹이어린이가 있거나 임신한 녀성근로자들에게는 야간로동, 시간외 로동, 휴식일로동을 시킬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를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내보낼 수 없다. 녀성근로자들이 일할 수 없는 직종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 중앙로동행정기관이 한다”고 명시한다.

²⁴⁹ 여성권리보장법 제33조는 “녀성근로자에게는 정기 및 보충휴가 외에 근속년한에 관계없이 산전 60일, 산후 180일간의 산전산후휴가를 준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로동보호법 제40조는 “녀성근로자들에게는 정기휴가와 보충휴가 외에 산전산후휴가를 더 준다. 정기휴가와 보충휴가는 다음해로 넘길 수 없다”고 명시한다.

²⁵⁰ 로동보호법 제21조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합숙, 식당, 세목장, 리발소, 휴게실, 탁아소, 유치원을 비롯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아동 권리 보호

로동법 제72조는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근로자 자녀들에게 의무교육을 주며 그들을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학교들에서 무료로 공부시킨다. 모든 학생들은 국가로부터 학생복과 교과서를 낮은 값으로 공급받으며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법은 근로 가능한 최저연령을 정하고 있는데, 로동법 제15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²⁵¹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²⁵²고 규정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2014년) 제19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아동로동을 엄격히 금지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 공민은 아동에게 로동을 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급여

로동법 제37조는 “근로자들은 성별, 연령, 민족별에 관계없이 같은 로동에 대하여서는 같은 보수를 받는다”고 규정한다.²⁵³

나아가 제38조는 “국가는 근로자들이 로동과정에서 소모하는 육체적 및 정신적 힘을 보상하고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생활비등급제를 정한다”고 명문화한다.

헌법 제70조는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고 규정한다.

업무상 건강 및 안전²⁵⁴

로동법 제5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로동안전교양사업체계를 세우고 근로자들에게 로동보호정책과 로동안전기술지식을 체득시켜 로동보호사업을 대중자신의

²⁵¹ 국제노동기구의 최저연령 협약(1972년, 제138호) 및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1999년, 제182호)은 모든 당사국으로 하여금 18세 미만인 자를 위험한 작업에 고용하거나 종사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험한 직업 및 활동 목록은 고용주 및 노동자와 상의하여 작성해야 한다. 위험한 작업은 보편적으로 최악의 형태의 아동 노동으로 여겨지며, 사업체들은 관련 국내법이 부재하더라도 이를 멀리하도록 조심해야 한다.

²⁵² 헌법 제31조에도 언급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 제2조에 의하면, 16세까지 아동으로 여긴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조는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한다.

²⁵³ 여성권리보장법 제31조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같은 로동에 대하여 여성에게 남성과 꼭 같은 로동보수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국제노동기구 동등보수 협약(1951년, 제100호)은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를 요구하며, 이는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보다 넓은 개념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자리 간 비교 뿐 아니라 서로 다르지만 가치가 동등한 일자리 간 비교도 필요하다고 명시한다.

²⁵⁴ 참고로,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작업환경(산업위생) 내 재해 관리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 측면(예를 들어, 고용주 및 노동자의 리스크 평가 참여)을 비교적 덜 강조한다. 국제 노동 기준은 “예방 안전 및 보건 문화” 개념을 전제로 한다. 이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에 대한 권리를 모든 차원에서 준수하는 문화를 의미하는데, 권리·책임·의무가 정립되고 예방의 원칙이 최우선순위인 체계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확보하는 데에 정부, 고용주, 노동자가 모두 적극적으로 힘쓰는 특징을 보인다[국제노동기구 산업안전 보건 증진체계에 관한 협약(2006년, 제187호) 제1조 (d) 참조]. 사회주의적 법치 제도 하에서 주로 생략되는 기본 산업안전보건 기준은 안전하지 않은 노동을 거부할 권리(작업중지권)인데, 이는 국제 노동 기준상 보호되는 권리이다. 예를 들어, 국제노동기구 산업안전 보건 협약(1981년, 제155호) 제13조는 “생명 또는 건강을 급박하고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작업을 중단한 노동자는 국내 조건 및 관행에 따라 부당한 후과로부터 보호받는다”고 명시한다.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에게 노동보호정책과 해당 부문의 노동안전기술지식을 체득시키지 않고서는 누구도 그들을 일 시킬 수 없다.”²⁵⁵ 제55조는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것은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들의 첫째가는 사업이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노동안전시설과 고열, 가스, 먼지 등을 막고 채광, 조명, 통풍 등을 잘 보장하는 산업위생조건을 갖추며 그것을 끊임없이 개선완비하여 노동재해와 직업성질환을 미리 막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노동보호법 또한 안전하고 건강하며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보장한다.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는 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 요구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에게 노동보호의 혜택이 정확히 차례지도록 하며 그들이 보다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조건에서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일하도록 한다.”²⁵⁶

노동법 제56조는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생산 및 작업조직에 앞서 노동안전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개소들을 제때에 없애야 한다. 생산 과정에 사고위험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생산을 멈추고 위험한 개소를 정비한 다음에 생산을 계속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노동보호법 제17조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 보호장치, 신호장치 같은 노동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노동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서는 근로자들에게 일을 시킬 수 없다”고 규정한다.²⁵⁷

노동법 제60조는 “국가는 근로자들에게 노동보호용구를 보장해주며 작업필수품 및 영양제를 무상으로 공급한다. 근로자들은 작업할 때 지정된 노동보호용구와 작업필수품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²⁵⁵ 노동법의 다음 조항도 이를 보충한다. 제9조: “노동안전교양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노동과정에 노동재해와 건강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노동안전교양체계를 바로세우고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안전교양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노동안전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여 근로자들이 국가의 노동보호정책과 노동안전기술지식, 노동안전규정, 노동안전조작법, 노동위생지식 같은 것을 정확히 알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7항: 노동안전교양을 받지 않은 근로자들에게는 일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15조: “해당 교육 및 양성기관에서는 노동안전공학과 노동보호학을 필수과목으로 정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²⁵⁶ 노동보호법은 노동 안전교육, 휴식권, 위험 부문 노동자를 위한 혜택, 직업성 질병으로 일할 수 없게 된 노동자 재배치, 노동 안전규정, 산업재해 등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제16조 내지 제20조는 국가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로 하여금 안전장비를 포함한 적절한 노동 환경 및 시설을 보장하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지운다. 제16조: “노동보호를 위한 조건보장은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노동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제17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 보호장치, 신호장치 같은 노동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노동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서는 근로자들에게 일을 시킬 수 없다.” 제18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노동안전시설에 대해 점검보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불비한 노동안전시설을 제때에 정비하여야 한다.” 제19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노동안전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설치된 노동안전시설은 노동행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의 승인없이 해체할 수 없다.” 제20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고열, 가스, 먼지, 소음, 진동, 습기, 방사선, 세균에 의한 피해를 막으며 위생학적 요구에 맞게 채광, 조명, 통풍, 난방조건 같은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열, 유해물질이 정해진 한계를 초과하는 곳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일을 시킬 수 없다.” 제25조와 제26조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노동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검사에 관한 내용을 기술한다. 제25조: “설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건물이나 시설물을 건설하는 경우 노동안전, 노동위생 같은 노동보호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건물이나 시설물은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 린접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26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노동안전시설, 노동위생조건에 대한 측정 및 검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설비, 검사기구는 정상적으로 검정하고 합격된 조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²⁵⁷ 노동보호법 제6장은 노동 안전규율의 확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7장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예방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산업재해에 대한 조사 절차를 규정한다. 제63조는 사고 ‘심의’ 시 다음을 논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 장소, 과정; 2) 산업재해의 원인; 3) 작업 현장에서의 (사고 전) 노동 보호 실태; 4)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 5)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자; 6) 피해자 및 그 가족의 보상 방법; 7) 산업재해 방지대책. 노동보호법 제8장은 노동보호 정책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고 규정한다.²⁵⁸ 노동보호법 제6조는 “국가는 노동보호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 기술적수단을 충분히 갖추고 현대화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자 보건의료

노동법 제58조는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검진을 정기적으로 조직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에 필요한 조치를 제때에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⁵⁹

나아가 제7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완전한 무상치료제에 의한 의료상혜택을 준다. 노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 및 그들의 부양가족은 치료, 료양, 예방, 해산 등 모든 의료봉사를 무상으로 받는다.”

노동법 제68조는 “근로자들은 노동에 의한 분배외에 추가적으로 많은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을 받는다”고 규정하며, 제69조는 “국가는 근로자들에게 쓸모있고 문화적인 살림집과 합숙을 보장한다. 국가는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 협동농장원들이 그것을 무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더해 제71조는 “국가는 근로자들의 어린이들을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탁아소,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고 규정한다.

장애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인보호법(이하 “장애인보호법”) 제5장(제30조부터 제41조까지)은 여러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제34조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애자의 노동보호조건을 충분히 갖추어 주어야 한다. 필요한 노동보호조건을 갖추어주지 않고는 장애자에게 로동을 시킬 수 없다”고 명시한다. 제32조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애자를 배치하는 경우 그의 장애정도와 성별, 연령, 체질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나아가 제37조는 “로동에 참가하는 장애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애자에게 로동과 휴식을 옹기 조직하며 정양과 휴양, 료양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²⁵⁸ 노동보호법 제17조 및 제27조 내지 제34조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 제17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 보호장치, 신호장치 같은 로동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로동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서는 근로자들에게 일을 시킬 수 없다.” 제27조: “유해로동, 고열로동, 중로동을 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작업대상과 성격에 따라 작업필수품, 로동보호용구, 영양제, 세척제, 약제 같은 로동보호물자를 공급한다.” 제28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근로자들에게 정해진 공급대상과 기준에 따라 해당한 로동보호물자를 공급하여야 한다. 생산현장에서 과학연구, 실습을 하는 연구사, 실습생과 필요에 따라 동원된 인원에게도 직종에 따르는 로동보호물자를 공급하여야 한다. 로동보호물자의 공급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제29조: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보호물자의 생산, 공급계획을 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30조: “로동보호물자는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한다. 로동보호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미 쓰던 것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31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보호물자보관시설을 갖추고 로동보호 물자가 손상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손상되었거나 오염된 로동보호물자는 제때에 수리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제32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어렵고 힘든 로동, 유해로동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영양제와 보호약제, 해독제 같은 것을 정해진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영양제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 제33조: “탄광, 광산, 림업, 수산, 지질탐사부문 같은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는 피복, 식료품, 기호품 같은 우대물자를 공급한다. 우대물자의 공급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제34조: “철도운송, 탄광 및 따로 정한 부문의 근로자들에게는 제복을 공급한다. 제복을 공급하는 부문과 대상, 공급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²⁵⁹ 노동보호법 제22조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보건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병원 또는 진료소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검진과 치료예방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로동재해위험이 특별히 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의무적으로 병원 또는 진료소를 두어야 한다.”

로동법 제7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국가는 로동재해, 질병, 부상으로 로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잃은 근로자들에게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일시적보조금을 주며 그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로동능력상실년금을 준다.”²⁶⁰ 장애자보호법 제40조는 “국가는 로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애자에게 보조금을 준다”고 명시하고, 제41조는 “국가는 로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애자의 의사에 따라 양생원 또는 양로원에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로동법 제77조는 “국가는 로동재해, 질병, 부상 등의 원인으로 근로자들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들의 양육을 받아오던 부양가족들에게 유가족년금을 주며 돌볼 사람이 없는 어린이들은 국가가 맡아 키운다”고 규정한다.

고령자

로동법 제74조는 “국가는 남자 60살, 여자 55살에 이른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근속로동년한을 가진 경우에 년로년금을 준다”고 규정한다.²⁶¹ 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2012) 제33조는 지식 있고 능력 있는 고령자가 계속 근무하려 할 경우 필요에 따라 알맞은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다.

로동보호법 제8조는 특히 주목할 만한데, “국가는 로동보호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²⁶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2021년 개정) 제2조는 노동 능력을 상실한 이들은 사회보장혜택을 받는다고 명시한다. “사회보장이란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부상으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 장애자의 생활과 건강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보장하여주는 인민적 시책이다.” 로동보호법 제23조는 직업성 질병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이들을 적절한 직종에 재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로동행정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직업성 질병으로 해당 직종에서 일할 수 없게 된 근로자들을 제때에 알맞은 직종에 배치하여야 한다.”

²⁶¹ 오로지 성별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차이 날 경우, 성차별에 해당한다.

별첨 3: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면담한 이탈자의 증인 진술

다음은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2015년과 2023년 사이 면담을 진행한 이탈자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강제노동과 관련하여 제공한 진술 중 일부이다. 각 인용구 끝의 괄호 안 시기와 장소는 해당 상황을 언제, 어디에서 겪었는지 의미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강제노동 유형

i. 구금 시설 내 노동

“우리는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일이 잦았고, 이 때문에 맞았다.”²⁶² (2008년, 사회안전성 집결소, 여성)

“감방마다 반장[다른 수감자를 감독하기 위해 교도소 관계자들이 지정하는 수감자]이 있다. 내가 할 당량을 채우지 못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면, 반장은 나를 때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 반장은 나를 막대기로 때렸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방에서 구타했다. 교도관들은 지켜보다가 잠시 후 반장에게 그만 때리라고 지시했다. 반장이 다른 수감자를 때리기를 꺼려하면, 교도관들이 반장을 때렸다.”²⁶³ (2014년, 사회안전성 집결소, 여성)

“커다란 통나무를 들어야 했는데, 무거워서 천천히 갔더니 나를 때렸다. 일할 때는 감독관 한 명과 장전된 총을 든 군인 두 명이 지켜봤다. 누가 도망치려 할 경우에만 총을 쏘지만, 내가 하는 일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총으로 나를 때리기도 했다.”²⁶⁴ (2006년, 교화소, 남성)

“하루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감방에 있는 여덟 명 모두 벌을 받았다. 노동시간이나 할당량을 늘리는 식으로 벌을 받곤 했다.”²⁶⁵ (2014년, 사회안전성 집결소, 여성)

“뜨개질반에는 수감자가 40-50명 정도 있었다. 뜨개질할 실을 900 그램 제공받았는데, 이것으로 상의 한 개 반 정도 뜰 수 있었다. 모자를 뜰 때는 실 20-25 그램을 제공받았는데, 이것으로 모자 한 개

²⁶² KOR/17/0063. 또한 KOR/17/0075, KOR/17/0076.

²⁶³ KOR/17/0125.

²⁶⁴ KOR/22/0003. 또한 KOR/20/0016.

²⁶⁵ KOR/17/0125.

정도 뜰 수 있었다. 옷이나 모자를 충분히 뜨지 못하는 경우, 독방에 보내거나 음식을 덜 받았다. 밤에 순찰근무를 하라는 벌을 주기도 했다.”²⁶⁶ (2012년, 교화소, 여성)

“[처벌로] 한겨울에 밖에 세워 뒀서 동상이 심하게 걸린 사람들도 있었다.”²⁶⁷ (2009년, 로동단련대, 여성)

“통나무 10미터짜리를 눈길에 끌고 내려오다가 경사지어서 나무가 너무 빨리 내려가는데 뒤에 나무도 너무 빨리 내려오고 내가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다.”²⁶⁸ (2011년, 교화소, 여성)

“팔만 이용해서 벽돌을 위로 날랐기 때문에 벽돌이 떨어질 때도 있었다. 이로 인해 다리나 팔, 또는 등도 다치는 경우도 있었다.”²⁶⁹ (2007년, 로동단련대, 여성)

“나는 로동단련대에 한 달 간 있었다. 정말 힘들게 일해야 했다. ... 땀감을 모아야 했는데, 아무런 장비도 제공받지 못해 맨손으로 일해야 했다.”²⁷⁰ (2014년, 로동단련대, 여성)

“단련대에서 지낸 일 년 반 동안 농장에서 일했는데,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건 없었기 때문에 농작물이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었다. ... 먹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주 쉽게 허약과 영양실조에 걸릴 수 있다.”²⁷¹ (2007년, 로동단련대, 여성)

“나는 농장에서 3개월 동안 짐승처럼 밤낮으로 일했다.”²⁷² (2007년, 집결소, 여성)

“[수감자들은] 일을 7시 반 경에 나간다. 일을 많이 요구하면 저녁 10시까지 하기도 한다. 휴식은 보장되지 않는다.”²⁷³ (2013년, 집결소, 남성)

“오전 5시에 일어나야 했다. 오전 7시 반에 모인 후 8시에 일하러 내보내고 저녁 9시에 돌아왔다. 임금을 받지 않은 채 하루 14시간 일했다. 강제노동이었다.”²⁷⁴ (2010년, 로동단련대, 여성)

²⁶⁶ KOR/20/0003.

²⁶⁷ KOR/17/0075.

²⁶⁸ KOR/20/0011.

²⁶⁹ KOR/18/0027.

²⁷⁰ KOR/22/0012.

²⁷¹ KOR/22/0017, KOR/17/0075, KOR/17/0128, KOR/20/0011도 참조.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기록한 구금 중 영양실조에 관한 사례는 다음에서 언급된다: KOR/17/0078, KOR/18/0009, KOR/18/0027, KOR/18/0029, KOR/18/0031, KOR/18/0032, KOR/18/0035, KOR/18/0075, KOR/19/0003, KOR/19/0004, KOR/19/0011, KOR/19/0015, KOR/19/0027, KOR/19/0032, KOR/19/0034, KOR/19/0036, KOR/19/0042, KOR/19/0043, KOR/19/0044, KOR/19/0051.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기록한 구금 중 충분하고 양질의 식사가 부족했던 사례는 다음에서 언급된다: KOR/17/0001, KOR/17/0049, KOR/17/0052, KOR/17/0057, KOR/17/0123, KOR/18/0050, KOR/18/0053, KOR/18/0074, KOR/18/0075, KOR/19/0002, KOR/19/0004, KOR/19/0010, KOR/19/0011, KOR/19/0013, KOR/19/0027, KOR/19/0032, KOR/19/0037, KOR/19/0046.

²⁷² KOR/17/0117.

²⁷³ KOR/20/0015, KOR/20/0031 및 KOR/17/0075도 참조한다.

²⁷⁴ KOR/17/0047.

“오전 6시에 일어나서 6시반에 아침을 먹고, 오전 7시 반부터 할당량이 끝날 때까지 일했다. 보통 밤 9시나 10시에 일이 끝났다.”²⁷⁵ (2007년, 로동단련대, 여성)

“건설현장에서 일해야 했다. ... 우리가 수행한 노동에 대한 보수는 집결소로 전달됐다.”²⁷⁶ (2013년, 집결소, 여성)

“보안국 집결소는 사람들을 데려다 노동을 시킨다. ... 보안국 집결소에서는 [우리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는다.”²⁷⁷ (2013년, 집결소, 남성)

“집결소 내에서도 노동을 시키고, 회사, 각 단위 농장에서 시켰다. 우리를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키면 집결소에서 돈을 받는다. [수감자들은 돈을 받지 않았다.] 청진시 어느 직장에서 수감자 서른 명, 스무 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인당 예를 들어 2만원이라는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겠지만, 집결소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했다.”²⁷⁸ (2010년, 집결소, 여성)

“집결소에서 개인 가정집으로 보내 집안일을 시켰다. 노동에 대한 보수는 집결소가 챙겼다.”²⁷⁹ (2011년, 집결소, 여성)

“중국으로 수출되는 자수 제품으로 버는 수익은 남성 수감자의 식사 제공에 사용됐다.”²⁸⁰ (2011년, 교화소, 여성)

“예를 들어 벽돌공장에서 일하게 되면, 벽돌공장에서 주는 돈을 계호가 받아서 도 집결소 소장에게 주는 시스템이다. 노동 대가가 수감자에게 돌아가는 일은 없다.”²⁸¹ (2013년, 집결소, 남성)

ii. 국가가 강제로 배정한 직장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를 직접 결정할 수 없다. 원하는 직업에 지원할 수도 없다. 이런저런 지시를 받는다 ...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²⁸² (남성)

“직장 배치를 받았으나 농촌(살던 고향)의 농장원으로 떨어졌다. 나는 출신 성분이 농장원이었다.”²⁸³ (여성, 2013년)

²⁷⁵ KOR/18/0027.

²⁷⁶ KOR/16/0020.

²⁷⁷ KOR/20/0015.

²⁷⁸ KOR/20/0013.

²⁷⁹ KOR/20/0008.

²⁸⁰ KOR/17/0126.

²⁸¹ KOR/20/0015.

²⁸² KOR/22/0010.

²⁸³ KOR/21/0003.

“아버지는 직업이 있었지만, 노동의 대가로 식량이나 임금을 받지는 않았다.”²⁸⁴ (여성)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노동자도 임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상으로 노동을 제공한 것이다.”²⁸⁵ (여성)

“국가가 고용한 이들조차 누구도 급여나 식량 배급을 받지 않는다.”²⁸⁶ (남성)

“묘목원에서 식량 작물을 재배한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급여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에서 일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 ... 나도 묘목원에서 일했지만 보수를 받지 않았다. 묘목원에서 사금도 채취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한 것이다. 금 판매로 얻은 수익 일부는 묘목원에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우리가 가졌다.”²⁸⁷ (남성, 2017년)

“광산에서 일했지만 급여는 지급받지 않았다. 급여가 없었기 때문에,金を 훔쳐 팔아 돈을 벌었다. 그 돈으로 쌀을 샀다. 내가 먹기 위한 채소는 내 마당에서 길렀다.”²⁸⁸ (여성, 2015년)

“직물공장에서 일했는데, 그렇다고 급여를 받은 것은 아니다. 매달 보수 대신 강냉이 5킬로그램을 받았다. 내가 자란 도시에서 일도 했다. 생산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공장 고위 관리들은 직원들을 쉬게 한 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식으로 돈을 벌었다. 고위 관리는 공장직원에게 4천원이나 5천원을 받았다. 쉬는 날에는 장사를 하며 돈을 벌기 위해 부업을 하곤 했다. 나는 부업으로 곡수, 과일, 채소를 팔았다. 보다 저렴한 가격에 사들인 후 시장에서 되팔았다.”²⁸⁹ (여성)

“우리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장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3일 동안 배정된 직장에 나가지 않으면, 잡혀갈 수 있다.”²⁹⁰ (남성, 2017년)

“북에서는 출근을 안 하면, 노동단련대를 가야 하는데 정작 배급은 주지 않는 것은 제기할 데가 없다. 기초적으로 먹을 것, 입을 것을 주고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어야 하는데, 큰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닌데, 기본도 해주지 않는다.”²⁹¹ (여성)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하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아 그 돈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우, 노동자 급여가 1달러 미만이다.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뿐이다. 남편이 회사에서 불법으로 돈을 모으거나 아내가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인데, 이 또한

²⁸⁴ KOR/20/0023.

²⁸⁵ KOR/20/0021.

²⁸⁶ KOR/20/0034. 또한 KOR/20/0002, KOR/21/0022, KOR/21/0030, KOR/22/0020.

²⁸⁷ KOR/20/0007.

²⁸⁸ KOR/20/0006.

²⁸⁹ KOR/22/0012.

²⁹⁰ KOR/20/0034.

²⁹¹ KOR/21/0003.

합법은 아니다.”²⁹² (남성)

“부업을 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고 단속이 있을 경우 체포되고 구금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장사를 할 수 없었다. 북의 모든 일반 국민은 내가 묘사한 상황에 처해있다. 북 국민 중 엘리트와 국영기업소 관료들은 보수를 잘 받지만, 일반 국민은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²⁹³ (남성)

“북에서 공식 일자리가 없는 이들은 로동단련대에 수감되는 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문제나 말썽을 피하기 위해 직장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국가가 배정한 일자리에서 빠지기 위해 3만원을 낸 다음,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버는 편이 낫다. ... 나는 급여를 받지 못했다. ... 서류상으로만 그 국영기관 소속이었고, 일을 빠지고 집에 있기 위해 매달 돈을 지불했다. ... 공식 직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불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등록해 뒀다.”²⁹⁴ (남성, 2019년)

“공식 직장이 있으면서도 어부로 일하는 남성이 많았다. 기업소에 이름을 올려 두고 장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여성도 많았다. 대부분 뇌물을 바쳐야 했고, 바치지 않는 경우 로동단련대에 보내졌다.”²⁹⁵ (남성)

“매일 일하러 나가면 돈을 낼 필요는 없지만, 돈을 전혀 벌지도 못한다.”²⁹⁶ (여성)

“지난 2-3년 동안 이 연구소는 직장에서 일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혁명수업을 진행했다. 과거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교육받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난 후, 혁명수업이 일주일에 세 번으로 늘었다. 우리는 대한민국과 미국 모두 적이며, 변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배웠다. 사람들은 대한민국과 미국에 대한 환상을 갖지 않을 것을 배웠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지만, 우리는 직장에서 교육을 받는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육받는다. 각 수업은 2-3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모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듣는 것만 허용되었고 질문은 할 수 없었다. 인민반 위원회 회의와는 다르다.”²⁹⁷ (여성, 2019년)

iii. 군 징집

“군에서 건설에 동원이 되거나, 농촌지원 등을 할 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김정일 방침을 앞장서 관철하는 일을 한다.”²⁹⁸ (여성)

“규정상으로는 정치학습 이후 수요일, 금요일만 [군사]훈련을 하기로 되어 있다. 특수기동대의 경우 매일 [군사]훈련을 한다. 하지만 실제 훈련은 하지 않고 작업만 한다. *****에 가서 작업(노동)하고, 건

²⁹² KOR/22/0010.

²⁹³ KOR/22/0009.

²⁹⁴ KOR/20/0035.

²⁹⁵ KOR/21/0030.

²⁹⁶ KOR/22/0012.

²⁹⁷ KOR/20/0001. 또한 KOR/20/0037.

²⁹⁸ KOR/21/0003.

물 짓고 미장하기 등의 일이었다.”²⁹⁹ (남성)

“평양 내 대규모 건설작업은 대부분 군인이 수행했다.”³⁰⁰ (남성)

“순찰대원으로 배치된 후, 다시 남포와 평양의 건설부문에 배치되었다. 한마디로 건설노동자로 일한 것이다.”³⁰¹ (남성)

“군에 복무하고 싶었으나,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1-2년 정도 미루고 싶었다. 하지만 즉시 입대하여 건설현장에서 일하도록 강요 받았는데, 보통 생각하는 군 복무처럼 느껴지진 않았다.”³⁰² (남성)

“북에서 도로건설을 담당했던 군단에 소속되어 있었다. ... 해당 군단에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일했다. 우리 부대는 평양에 주둔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평양 내의 도로를 건설했다. 군단 소속 병사 수는 정확히 모르나, 대략 3만에서 4만 명 정도의 병사가 소속되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우리는 국가의 감독 하에 모든 고속도로 및 주요 도로의 건설을 맡았다.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도로를 건설했다. 유지 보수 업무도 했다.”³⁰³ (남성)

“15년 동안 군 복무를 하면서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을 많이 목격했다. ... 고속도로 건설 때문에 415미터에 달하는 터널을 뚫어야 했다. 통과하는 산에 맞게 터널을 뚫는다면 길이는 390미터로 설정해야 했다. 하지만 관료들이 김일성 생일이 4월 15일이라고 터널 길이를 415미터로 설정한 것이다. 이 터널 공사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었다.”³⁰⁴ (남성)

“임금은 계속해서 받지 못했다. ... 공식적으로는 급여가 있었지만, 사실상 받지 못했고 그조차도 금액이 너무 적어서 쓸데가 없었다.”³⁰⁵ (남성)

“의무 군사복무 기간이 끝나고 중위로 승진했다. 월급으로 3천원에서 4천원을 받았다. 월급이 매우 적다. 1 달러가 5천원 또는 그 이상에 해당됐기 때문에, 월급은 1달러 미만이었다.”³⁰⁶ (남성, 2016년)

iv. 돌격대

“[도망 갔다가] 잡힌 사람들이 돌격대 돌아가기 싫다고 하면 로동단련대에 보내는 것이다.”³⁰⁷ (여성)

²⁹⁹ KOR/20/0024.

³⁰⁰ KOR/16/0068.

³⁰¹ KOR/21/0025.

³⁰² KOR/21/0031.

³⁰³ KOR/22/0010.

³⁰⁴ KOR/16/0068.

³⁰⁵ KOR/21/0025.

³⁰⁶ KOR/22/0010.

³⁰⁷ KOR/20/0013.

“너무 아파서 일을 못할 지경이라도 소대장이 와서 일터로 나를 끌고 갔다. 일을 하지 않으면 중대장이 때렸다.”³⁰⁸ (남성, 2015년)

“국가로부터 보수도 무엇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도 직접 가지고 와야 했다.”³⁰⁹ (여성)

“일에 대한 대가로 배급이나 급여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³¹⁰ (여성, 2016년)

“여단 사람들이 너무 굶주려 절도를 자주 했기 때문에 평판이 좋지 않았다.”³¹¹ (남성)

“식량이 충분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기회만 있다면 생존을 위해 음식을 훔쳤다.”³¹² (여성, 2008년)

“강냉이쌀 150그램 정도를 하루 세 번 줬다.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하루에 강냉이쌀 450그램은 충분하지 않았다. 가끔은 강냉이쌀 대신 손가락 세 개 만한 감자를 다섯 알 받았는데, 강냉이쌀이나 감자 둘 중 하나를 받았지 둘 다 받는 일은 없었다. ... 배고파서 두 달 반 후에 도망쳤고 장마당으로 돌아갔다.”³¹³ (남성, 2015년)

“생활환경은 형편없었다. 겨울에는 추위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 이불을 받긴 했지만, 따뜻함을 느끼기엔 부족했다.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여름에도 선풍기나 조명은 이용하지 못했고, 대신 숯불을 사용했다.”³¹⁴ (여성, 2004년)

v. 작업 동원

“5월부터 묘목을 옮겨 심어야 했다. 이를 끝내야 하는 기한도 있었다. [또한] 김매기 등 다른 작업도 해야 했다. 가을에는 수확을 해야 했다. 매 단계마다 우리를 동원했다. 겨울에는 각 인민반 구성원마다 퇴비 1톤을 바쳐야 했다.”³¹⁵ (여성)

“일상 속에서도 매일 아침 인민반이 ‘가구별 동원’을 했다. 아침식사 전에 실시해야 했다. 최근에는 아파트 건설을 위해 ‘가구별 동원’을 했는데, 예를 들어 모래를 나르거나, 철도를 청소하거나, 철길에 사용할 돌을 가지고 왔다. 위험한 일은 아니었지만, 전혀 쉴 수 없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매일마다 ‘오전 5시에 일어나서 또 일해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³¹⁶ (여성)

³⁰⁸ KOR/20/0028.

³⁰⁹ KOR/20/0021.

³¹⁰ KOR/20/0003. 또한 KOR/20/0035, KOR/22/0004.

³¹¹ KOR/16/0014. 또한 KOR/20/0034, KOR/22/0004(식량 부족 관련).

³¹² KOR/21/0014.

³¹³ KOR/20/0028.

³¹⁴ KOR/22/0004.

³¹⁵ KOR/16/0019.

³¹⁶ KOR/20/0032.

“우리 지역에서는 한 달에 두세 번 무보수 노동을 해야 했는데, 가끔은 훨씬 자주 했다. 도로건설이나 발일을 보통 하루 정도 진행하는 데에 동원되었고, 보수는 없었다. 겨울에는 그런 일이 더 적었다. 인민반이 나를 동원한 것이다.”³¹⁷ (남성)

“녀맹은 누구나 55세 미만이면 가입하는데, 녀맹에서 매일 건설장에 데리고 가서 ‘소랭이’에다 건설 ‘몰타’를 매일 아파트 3층으로 날라야 한다.”³¹⁸ (여성)

“마을 차원에서 처리할 일이 있으면, 마을 대표가 시당 조직에게 지시를 받았다. 마을 대표가 주민 동원을 위해 각 인민반장에게 과업을 배정했다. ... 그 중 하나가 뽕나무를 키우는 것이었다. 필요한 만큼 뽕나무를 키우지 못할 경우, 현금을 내서 부족분을 대체해야 했다. 녀맹원들에게 매년 배정된 일이었다. 뽕나무를 키워서 뽕잎을 따야 한다. 우리 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던 활동이다. 봄과 여름에는 뽕나무 작업을 20일 동안 해야 했다.”³¹⁹ (여성)

“작년 4월에 출산한 아이가 올해 돌 지났는데 그러면 녀맹 생활을 해야 한다. 출생 후 1년 정도는 엄마가 녀맹 생활을 안 해도 된다. 직장이 없으면 누구나 녀맹 생활을 해야 한다. 임신 당시에도 녀맹 생활을 안 해도 된다. 아기를 건설장에 데리고 나가는 사람도 있다. 나가기 싫으면 또 돈을 내야 한다.”³²⁰ (여성)

“아내는 돈을 벌기 위해 가발을 만든다. 모자도 뜬다. 가정주부였다. 녀맹원이었고, 녀맹이 조직하는 동원사업에 참여해야 했다. 아내는 시간이 남을 때 가발과 모자를 만들었다.”³²¹ (남성)

“윗동네 주민 중에 어렵게 생계를 꾸리는 와중에 계속 인민반이 동원을 해서 자살한 여자가 있었다. 어머니가 알던 여자라, 어머니께 자살했다고 들었다. 자살은 반역죄이기 때문에 그 친척들은 사회생활이나 직장에서 더 이상 승진을 못한다.”³²² (남성)

“인민학교도 노동에 동원되어서 땀감을 해오거나, 모내기 돕기 등을 아무리 어려워도 예외 없이 다 시켰다.”³²³ (여성)

“청년 뿐 아니라 군인들도 다른 도에서 동원했다. 아이들은 수업이 끝나고 2시부터 4시까지 현장에 동원되어 잔일을 맡았다.”³²⁴ (남성)

“학생들은 김매기 같은 농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에서 동원되었다. 학생들에게 국가에 기여하는

317 KOR/20/0026.

318 KOR/20/0011.

319 KOR/17/0009.

320 KOR/20/0011.

321 KOR/20/0007.

322 KOR/21/0030.

323 KOR/18/0036.

324 KOR/20/0035.

일이라고 했다. 농사철에는 손가락 들 힘이 있는 시민이라면 모두 노동을 해야 한다고 김정은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 중학생일 때는 일 년에 열 번 정도 동원되었다. 고등학교 때는 봄철에 모내기 등을 하기 위해 약 한 달 간 집을 떠나 농장에 동원되었다. 나는 가지 않았는데, 선생님께서 핑계를 댔더니 그냥 받아들였다. 자녀가 아프다고 부모가 말해주면 된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모든 학생이 참가해야 한다.”³²⁵ (남성)

vi. 해외노동자

“공식 업무는 주택 건설이었다. 인테리어, 벽돌작업, 미장, 타일작업 등을 했다. 비공식 업무[자유계약 업무]도 동일했다. ... 건설현장에서 취직했다. 8시부터 12시까지 일하고, 한 시간 점심을 먹고, 다시 오후 10시까지 일한 뒤 잠들었다. 매일 10시간에서 12시간 일했고, 휴무는 일요일 뿐이었다.”³²⁶ (남성)

“하루 12시간 일했다. ***에서 집을 짓고 있었다. 블록과 타일을 깔고 있었다. 기온이 섭씨 50-60도 정도 되었다. 시멘트도 발랐다. 인도를 포장하기도 했다. 모두 야외작업으로, 매우 힘들었다. 먼지바람과 높은 습도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 ... 날씨 때문에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피부도 망가졌다.”³²⁷ (남성)

“노동시간이 매우 길었다. 해 뜨기 전부터 해 지고 나서까지 계속됐다.”³²⁸ (남성)

“오전 8시에 일을 시작하고, 하루 15시간에서 16시간 일하며 가끔은 밤새 일한다. 그러나 한 달 뒤 국가가 설정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한 달 동안 노예로 일하고도 급여를 전혀 받지 못했다.”³²⁹ (남성)

“우리가 할당량을 채우는지 확인하려고 반장이 따라다녔다. 열 시간 안에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두 시간 정도 더 일해야 했고 그러지 않으면 쉬지 못하게 했다.”³³⁰ (남성)

“월급의 80 퍼센트 이상은 국가가 가져갔다.”³³¹ (남성, 2016년)

“내가 마땅히 받을 돈을 지급했다면, 나는 한국에 올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건설측량 전문가였는데, 장부도 관리했기 때문에 돈을 얼마나 가지고 갔는지 알고 있다. 북 이탈자 중 일부는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해서 러시아를 떠났다. 이는 인권 문제라고 생각한다. 북 노동자들은 중국, 러시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몽골에서 일하는데, 급여의 10퍼센트만 지급 받는다.”³³² (남성, 2014년)

³²⁵ KOR/22/0019. 또한 KOR/16/0095 및 KOR/17/000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아동 노동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다음을 참조한다. “북한 아동 강제노동 보고서 Unending Toil: Child Labor within North Korea,” 성통만사, 2018년 1월 23일.

³²⁶ KOR/21/0057.

³²⁷ KOR/16/0071.

³²⁸ KOR/21/0012.

³²⁹ KOR/21/0026.

³³⁰ KOR/21/0057.

³³¹ KOR/16/0071. 또한 KOR/22/0010.

³³² KOR/20/0042.

“급여를 받았지만, 내가 한 일에 비해 충분치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가지고 가기 위해 돈을 저축하려고 노력했다.”³³³ (여성, 2020년)

“국가보위성이 [기여금을 더 내라고] 압박을 해서 ***에 있는 직장을 떠났다.”³³⁴ (남성)

“이탈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기업소에서 우리 여권을 가지고 있었다.”³³⁵ (남성, 2014년)

“잠을 별로 못 잤다. 자유가 없었고, 언제나 통제를 받고 있었다.”³³⁶ (여성, 2020년)

“동료들 중에도 스파이가 있고, 이들은 국가보위성 관리에게 보고해야 한다. 무슨 행동을 하거나 동료 노동자들과 말을 할 때에도 조심해야 한다.”³³⁷ (남성, 2017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았다.”³³⁸ (남성)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라디오를 듣거나 영상을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보위성 관리들이 엄격하게 통제했다.”³³⁹ (남성, 2016년)

“나는 컨테이너에서 살았다. 길이는 5미터 정도 되었고, 여덟 명이 함께 살았다.”³⁴⁰ (남성)

“가로세로 약 4미터와 5미터인 방에서 여섯 명 내지 일곱 명이 함께 살았다.”³⁴¹ (남성, 2016년)

“피로 때문에 안전사고와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러시아 회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에 직원이 사망하지 않도록 휴식을 주라고 했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는 말을 듣지 않았다. 나도 사고를 많이 목격했다.”³⁴² (남성, 2014년)

“나는 정기적으로 수면제와 진통제를 먹었다. ... 약을 사다 보니 돈도 없어졌다. 약 없이는 살 수 없었다. 일을 하기 위해 몸을 관리해야 했기 때문에 저축은 아예 불가능했다.”³⁴³ (남성, 2016년)

333 KOR/22/0021.

334 KOR/22/0018. 또한 KOR/22/0011, KOR/22/0015.

335 KOR/20/0042.

336 KOR/22/0021.

337 KOR/22/0011.

338 KOR/16/0068.

339 KOR/16/0071.

340 KOR/16/0068.

341 KOR/16/0071. 또한 KOR/22/0011.

342 KOR/20/0042. 또한 KOR/21/0012.

343 KOR/16/0071.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 Palais des Nations
CH 1211 Geneva 10 - Switzerland
- Website: ohchr.org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서울)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03188)
- 이메일: ohchr-seoul@un.org
- 웹사이트: seoul.ohchr.org

